

# **10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2018.12.





## 목 차

|                              |           |
|------------------------------|-----------|
| <b>제 1 장 재정패널 조사의 개요</b>     | <b>1</b>  |
| 1. 조사배경                      | 1         |
| 2. 조사개요                      | 1         |
| <b>제 2 장 조사 설계</b>           | <b>3</b>  |
| 1. 표본설계                      | 3         |
| 2. 표본 구성                     | 6         |
| 3. 가중치 산출                    | 14        |
| <b>제 3 장 실사 진행 과정</b>        | <b>29</b> |
| 1. 실사 준비 과정                  | 29        |
| 2. 실사 진행 과정                  | 32        |
| 3. 소득세 및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 38        |
| <b>제 4 장 재정패널 표본 특성</b>      | <b>41</b> |
| 1. 조사 결과 분석 기준               | 41        |
| 2. 표본가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 42        |
| 3. 표본가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 44        |
| <b>제 5 장 가구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b>  | <b>47</b> |
| 1. 표본가구의 경제적 상황              | 47        |
| 2. 가구 조사결과 요약                | 52        |
| <b>제 6 장 가구원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b> | <b>57</b> |
| 1. 가구원 조사결과 요약               | 57        |
| 2. 가구원 의식조사 결과 요약            | 63        |

## 제 1 장 재정패널 조사의 개요

### 1. 조사배경

2007년 1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해 세금제도 개편 시 정책효과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행 국세청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즉,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의 불합리성과 국민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2008년부터 재정패널조사를 수행한 것이다.

### 2.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2017년 재정패널 조사는 1차년도에 구축된 전국(제주도 제외) 5,014가구와 2009년에 탈락한 가구를 추가해서 추출한 추가가구 620가구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원가구의 가구원이 결혼, 취업 등의 사유로 분가하였을 경우 분가한 가구원을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가구원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활동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조사표의 구성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개인) 조사표로 구성된다. 가구 조사표는 가구의 현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 연간 소득이나 소득 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3) 실사 수행기관

2017년 2월 중 외부 조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었다. 공모 결과 1~9차년도 조사를 진행했던 마케팅·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인 KANTAR가 재정패널조사의 실사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 4) 조사기간 및 조사 기준시점

2017년 재정패널 조사는 2017년 5월~9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조사표에서 측정하는 기준 시점은 2016년이며,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을 측정하는 질문은 2016년 1월~12월간의 1년을 기준으로 조사했고, 저량(stock)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단, 가구원 조사 표의 경제활동 상태는 조사 시작 시점인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5) 조사방법

재정패널 조사는 조사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가 심야에 귀가해 만나기가 어렵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조사 방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조사 도구는 이전 차수와 동일하게 종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6) 조사일정

2017년 재정패널조사의 현장 실사는 5월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9월초까지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9월 이후에도 비교적 많은 가구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해 재컨택을 지속하면서 실사 시작일이 연기됨에 따라 실사 종료일이 다소 지연되었다.

## 제 2 장 조사 설계

### 1. 표본설계

#### 1) 표본크기

기본적으로 10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의 목표 유효표본 크기는 1차년도에 구축된 최초가구 5,014개와 2차년도에 추가로 추출한 추가표본 가구 620개 가구, 그리고 이 가구들에서 2차년도~9차년도에 가구원 중 일부가 분가하여 형성한 분가가구 597개 가구이다. 단 9차년도까지 2회 이상 사망 또는 해외 거주 및 더 이상 조사가 어렵다고 확인된 222가구 및 분가 표본에서 소멸된 35가구(사망 또는 해외거주 5가구, 원가구/분가가구 합가 30가구)는 추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2) 모집단

재정패널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의 개념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재정패널 조사의 최초표본가구와 추가표본가구를 추출하기 위한 모집단 자료(sampling frame)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중 통계청에서 외부 통계작성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90% 자료를 이용하였다.

#### 3) 표본설계 개요

2008년도에 표집된 전국 5,014가구와 2009년에 추가로 조사된 추가가구 620가구, 그리고 표본가구에서 분가한 분가가구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에 성공한 표본은 2017년도 재정패널조사의 표본으로 재표집 된다.

##### (1) 1차년도 최초표본 설계

1차년도 재정패널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신축아파트 입주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하는

데, 이 때 조사구는 전수조사구 90%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조사구에서의 일정 수의 가구를 2차적으로 추출하는 2단계 짐락추출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신축아파트는 2005년 조사 당시에 없었던 지역으로 센서스 조사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05년 11월 이후 입주아파트를 우선 60~80가구 정도씩 끓어 일종의 가상적인 조사구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의 가구추출률과 비슷한 추출률이 유지되도록 표본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또한 재정패널조사의 목적을 감안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실제 분포보다 많이 표집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을 선정했고, 이 지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과대표집(oversampling)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조사구에서 추출하는 가구 수는 5개로 결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신축아파트 조사구와 과대표집 조사구도 역시 한 개의 조사구에서 다섯 가구를 추출하였다. 그러므로 가구 표본 5,010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 조사구 수는 1,002개로 설계하였다. 다만, 현장 조사 진행 과정에서 한 조사구 내에서 5가구가 아닌 4가구나 6가구가 추출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해 총 1,002개의 조사구에서 5,014개 가구가 표집 되었다.

## (2) 2차년도 추가표본 추출

2차년도 조사 진행 과정에서 최초표본 가구가 조사 참여를 거절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몇 차례 방문을 해도 가구원을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였다. 기존의 패널조사는 종단적 분석이 중요한 연구목적이므로 기존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에만 집중해 왔으며, 원표본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표본규모 증가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패널조사의 주 연구 주제인 가구의 조세·재정 정보는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세 납부 유형별로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2차년도에 탈락된 원표본 가구 크기만큼 추가로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때 추가표본의 추출 방식은 확률추출법에 의거한다. 탈락한 최초표본( $n$ )이 속해 있던 조사구 내에서 가구리스트 정렬 순서상  $n+1 \rightarrow n-1$  순서로 체계적인 추출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1차년도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추출했던 방식과 동일하며, 랜덤화의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탈락된 표본과 여러 가지 변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08년과 2009년에 추출된 원표본 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재정패널 원표본 가구 구성

(단위: 가구)

| 표집틀       |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br>(특정지역 과대표집 포함) |       |     |     | 신축아파트조사구 |     | 합계    |
|-----------|------------------------------|-------|-----|-----|----------|-----|-------|
|           | 동부                           |       | 읍면부 |     | 동부       | 읍면부 |       |
| 조사구<br>형태 | 일반                           | 아파트   | 일반  | 아파트 | 아파트      | 아파트 |       |
| 전국        | 2,402                        | 2,013 | 657 | 193 | 323      | 46  | 5,634 |
| 서울        | 658                          | 507   | -   | -   | 115      | -   | 1,280 |
| 부산        | 253                          | 143   | 10  | -   | 23       | -   | 429   |
| 대구        | 165                          | 102   | 12  | 11  | 19       | 5   | 314   |
| 인천        | 134                          | 123   | 12  | -   | 17       | -   | 286   |
| 광주        | 103                          | 86    | -   | -   | 10       | -   | 199   |
| 대전        | 110                          | 81    | -   | -   | 10       | -   | 201   |
| 울산        | 62                           | 60    | 10  | 11  | 10       | -   | 153   |
| 경기        | 382                          | 413   | 83  | 51  | 54       | 18  | 1001  |
| 강원        | 65                           | 62    | 37  | 11  | 10       | -   | 185   |
| 충북        | 64                           | 69    | 42  | 12  | 6        | 7   | 200   |
| 충남        | 53                           | 55    | 76  | 20  | 12       | 5   | 221   |
| 전북        | 92                           | 81    | 78  | 10  | 12       | -   | 273   |
| 전남        | 68                           | 58    | 116 | 10  | 10       | -   | 262   |
| 경북        | 89                           | 78    | 113 | 24  | 5        | 5   | 314   |
| 경남        | 104                          | 95    | 68  | 33  | 10       | 6   | 316   |

\* 원표본 가구 = 최초표본 가구 + 추가표본 가구

### (3) 분가가구 추적 조사

2008년에 표집된 최초가구(5,014가구)나 2009년에 표집된 추가가구(620가구)에 속해 있던 가구원이 결혼이나 경제적 이유로 2017년 조사시점에 분가해 나갔을 경우에는 분가한 가구원을 찾아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가하는 가구의 대부분은 결혼, 직장 등의 사유로 분가하는 젊은 가구원이며 이들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가 가구를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 패널가구의 노쇠화가 진행되고 신규 생성가구는 조사에서 누락되므로 전체 모집단 특성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

다만, 군입대나 해외거주, 가출, 병원 요양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구원은 신규 가구를 생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적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대졸자 이하의 자녀가 학업 목적으로 분가했을 경우에는 원가구에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가구원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2. 표본 구성

### 1) 전체 표본가구 구성

10차년도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4,839가구가 표집 되었다. 2017년도 표본가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3] 2017년 최종 표본구성

(단위: 가구)

| 시도<br>(10차년도 거주<br>지역 기준) | 최초<br>표본가구 | 추가<br>표본가구 | 2-9차년도<br>분가가구<br>추적 | 2016년 6월<br>이전<br>분가가구 | 2016년 7월<br>이후<br>분가가구* | 총합계   |
|---------------------------|------------|------------|----------------------|------------------------|-------------------------|-------|
| 전국                        | 3,730      | 506        | 517                  | 37                     | 49                      | 4,839 |
| 서울                        | 614        | 140        | 95                   | 8                      | 10                      | 867   |
| 부산                        | 290        | 42         | 46                   | 1                      | 5                       | 384   |
| 대구                        | 224        | 27         | 31                   | 0                      | 6                       | 288   |
| 인천                        | 181        | 24         | 21                   | 2                      | 3                       | 231   |
| 광주                        | 141        | 13         | 36                   | 5                      | 3                       | 198   |
| 대전                        | 157        | 25         | 23                   | 4                      | 1                       | 210   |
| 울산                        | 107        | 7          | 18                   | 1                      | 0                       | 133   |
| 경기                        | 679        | 117        | 66                   | 3                      | 9                       | 874   |
| 강원                        | 141        | 6          | 12                   | 3                      | 1                       | 163   |
| 충북                        | 127        | 23         | 12                   | 2                      | 0                       | 164   |
| 충남                        | 159        | 13         | 11                   | 2                      | 2                       | 187   |
| 전북                        | 196        | 17         | 33                   | 0                      | 1                       | 247   |
| 전남                        | 220        | 6          | 29                   | 1                      | 3                       | 259   |
| 경북                        | 229        | 17         | 33                   | 0                      | 2                       | 281   |
| 경남                        | 248        | 24         | 47                   | 3                      | 3                       | 325   |
| 제주                        | 4          | 1          | 2                    | 1                      | 0                       | 8     |
| 세종                        | 13         | 4          | 2                    | 1                      | 0                       | 20    |

\* 2016년 7월 이후 분가가구는 2018년 조사 시점부터 정식 유효 표본으로 인정됨.

### 2) 원표본가구 유지율

2008년도에 구축되었던 원패널가구 중 2017년도에도 조사에 성공하여 패널로 유지된 가구는 모두 4,236가구로 패널 유지율은 75.2%이다. 소득과 자산, 세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

루는 점과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할당된 표본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비교적 양호한 유지율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패널 유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83.9%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67.3%로 가장 낮았다. 지방의 탈락률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탈락률이 좀 더 높은 현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표 4] 원표본가구 유지율A: 분모에 사망과 해외거주 포함

(단위: 가구)

| 시도 | 원표본<br>지역별 가구수 | 2017년도<br>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 원표본가구 유지율* |
|----|----------------|-------------------------|------------|
| 전국 | 5,634          | 4,236                   | 75.2       |
| 서울 | 1,280          | 862                     | 67.3       |
| 부산 | 429            | 329                     | 76.7       |
| 대구 | 314            | 249                     | 79.3       |
| 인천 | 286            | 200                     | 69.9       |
| 광주 | 199            | 160                     | 80.4       |
| 대전 | 201            | 163                     | 81.1       |
| 울산 | 153            | 121                     | 79.1       |
| 경기 | 1001           | 720                     | 71.9       |
| 강원 | 185            | 151                     | 81.6       |
| 충북 | 200            | 158                     | 79.0       |
| 충남 | 221            | 179                     | 81.0       |
| 전북 | 273            | 211                     | 77.3       |
| 전남 | 262            | 218                     | 83.2       |
| 경북 | 314            | 250                     | 79.6       |
| 경남 | 316            | 265                     | 83.9       |

\* 원표본 유지율은 2008년 조사 당시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음.

\*\*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는 최초표본 가구수+추가표본 가구수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널유지율을 계산할 때에는 ‘사망’과 ‘해외거주’와 같은 케이스는 가구가 소멸된 것으로 분모에서 제외한다. 10차년도에 접어들면서 사망 가구가 100가구를 넘어서고, 해외거주 가구도 50가구를 넘었다. 사망이나 해외거주 등 조사 불가한 가구가 150가구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유지율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패널조사와의 비교를 위해서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패널 유지율을 계산하도록 한다.

[표 4] 패널유지율 계산방법

| 구분                  | 계산법                                       | 실제 계산에 적용되는<br>분모수 |
|---------------------|---|--------------------|
| 원표본유지율<br>패널유지율(A)  | 표집된 원가구 전체를 분모로 함                         | 5,634 가구           |
| 유효표본유지율<br>패널유지율(B) | 원표본 가구 중 소멸가구(사망, 수용, 해외거주 등)를<br>분모에서 제외 | 5,412 가구           |

9차년도에 이어 10차년도 연속 해외거주로 파악된 원표본 50가구, 가구원 전체가 사망으로 확인된 가구가 105가구로 총 155가구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일부 가구는 거듭된 추적실패로 인해 실제로는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거나,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파악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조사원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전임 조사원이 해외에 거주하였다고 파악한 가구를 자신이 연락했을 때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추적실패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재정패널 조사에서 컨택 결과가 추적실패로 해마다 엇갈렸던 가구들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고 조세 재정연구원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장기간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된 11 가구를 소멸하였다. 이 소멸 가구들은 다년간 추적실패이면서 1944년생 이상 1인 단독 거주가구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표본 5,634가구 중 패널유지율(B) 계산을 위한 분모는 소멸된 원표본 222가구를 제외한 5,412가구이다. 이를 기준으로 패널유지율을 계산해보면 전국 기준으로 78.3%로 집계된다.

[표 6] 원표본가구 유지율 B : 분모에서 사망과 해외거주 제외

(단위: 가구)

| 시도 | 원표본<br>지역별 가구수 | 2017년도<br>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 원표본가구 유지율* |
|----|----------------|-------------------------|------------|
| 전국 | 5,412          | 4,236                   | 78.3       |
| 서울 | 1,236          | 862                     | 69.7       |
| 부산 | 410            | 329                     | 80.2       |
| 대구 | 307            | 249                     | 81.1       |
| 인천 | 271            | 200                     | 73.8       |
| 광주 | 190            | 160                     | 84.2       |
| 대전 | 191            | 163                     | 85.3       |
| 울산 | 148            | 121                     | 81.8       |
| 경기 | 970            | 720                     | 74.2       |
| 강원 | 180            | 151                     | 83.9       |

|    |     |     |      |
|----|-----|-----|------|
| 충북 | 186 | 158 | 84.9 |
| 충남 | 215 | 179 | 83.3 |
| 전북 | 257 | 211 | 82.1 |
| 전남 | 248 | 218 | 87.9 |
| 경북 | 297 | 250 | 84.2 |
| 경남 | 306 | 265 | 86.6 |

\* 원표본 유지율은 2008년, 2009년 조사 당시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음

\*\*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는 최초표본 가구수+추가표본 가구수임.

재정패널조사의 10차년도 패널유지율(A) 75.2%는 국내외 유수 패널과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패널조사로 불리는 노동패널 10차년도 조사 유지율(75.5%)과 비슷한 수준이고, 복지패널의 유지율(67.3%)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다.

[표6] 국내외 주요 패널조사 패널유지율 비교

(단위: %)

|       | 재정패널       | 노동패널       | 복지패널       | 미국PSID     | 독일GSEP     | 영국BHPs     |
|-------|------------|------------|------------|------------|------------|------------|
| 2차년도  | 89.0(2009) | 87.6(1999) | 92.1(2007) | 89.0(1969) | 89.9(1985) | 87.7(1992) |
| 3차년도  | 84.3(2010) | 80.9(2000) | 86.7(2008) | 86.3(1970) | 86.0(1986) | 81.5(1993) |
| 4차년도  | 81.9(2011) | 77.3(2001) | 83.9(2009) | 83.7(1972) | 84.9(1987) | 79.9(1994) |
| 5차년도  | 79.9(2012) | 76.0(2002) | 80.3(2010) | 82.5(1972) | 81.3(1988) | 76.8(1995) |
| 6차년도  | 79.0(2013) | 77.2(2003) | 75.4(2011) | 81.2(1973) | 79.2(1989) | 77.3(1996) |
| 7차년도  | 78.6(2014) | 77.3(2004) | 74.5(2012) | 79.6(1974) | 78.4(1990) | 76.0(1997) |
| 8차년도  | 77.8(2015) | 76.4(2005) | 72.1(2013) | 78.3(1975) | 78.9(1991) | 74.1(1998) |
| 9차년도  | 76.8(2016) | 76.4(2006) | 69.2(2014) | 76.8(1976) | 78.4(1992) | 72.1(1999) |
| 10차년도 | 75.2(2017) | 75.5(2007) | 67.3(2015) | 75.2(1977) | 78.8(1993) | 70.4(2000) |

\*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의 유지율은 계산법A를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해외 사례는 노동패널 13차 기초분석 보고서에서 재인용했으나 산출 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음

\* PSID : Panel Study Income Dynamics

\* GSEP : German Socio-Economic Panel

\* BHPS :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 3) 분가표본 가구 유지율

2008년~2016년 원가구에 속해있던 가구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분가하여 나간 분가가구 중 추적해야 할 분가가구는 597가구로 확인되었다. 그 중 35가구가 사망, 해외 거주, 원가구 합가 등으로 소멸됐고, 최종적으로 10차년도 조사에서는 517개의 분가가구가 조사에 성공하

였다. 소멸을 분모에서 제외한 분가가구 유지율은 92.0%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분가표본 가구 유지율

(단위: 가구, %)

| 시도* | 추적해야 하는 분가가구 |              | 2017년<br>조사성공 | 분가가구 유지율 |       |
|-----|--------------|--------------|---------------|----------|-------|
|     | 소멸 포함<br>가구수 | 소멸 제외<br>가구수 |               | 유지율A     | 유지율B  |
| 전국  | 597          | 562          | 517           | 86.6     | 92.0  |
| 서울  | 115          | 111          | 100           | 87.0     | 90.1  |
| 부산  | 49           | 47           | 45            | 91.8     | 95.7  |
| 대구  | 34           | 32           | 29            | 85.3     | 90.6  |
| 인천  | 22           | 21           | 20            | 90.9     | 95.2  |
| 광주  | 36           | 35           | 34            | 94.4     | 97.1  |
| 대전  | 19           | 19           | 19            | 100.0    | 100.0 |
| 울산  | 24           | 22           | 22            | 91.7     | 100.0 |
| 경기  | 82           | 75           | 66            | 80.5     | 88.0  |
| 강원  | 24           | 20           | 17            | 70.8     | 85.0  |
| 충북  | 16           | 15           | 15            | 93.8     | 100.0 |
| 충남  | 19           | 19           | 17            | 89.5     | 89.5  |
| 전북  | 42           | 36           | 34            | 81.0     | 94.4  |
| 전남  | 26           | 24           | 23            | 88.5     | 95.8  |
| 경북  | 39           | 36           | 30            | 76.9     | 83.3  |
| 경남  | 50           | 50           | 46            | 92.0     | 92.0  |

\* 분가가구 시도 구분은 최초 조사 당시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했음

#### 4) 탈락가구 현황

##### (1) 원표본 가구 중 탈락·소멸 가구 유형

10차년도 조사 참여를 거부한 1,221가구를 사유별로 보면, 강력거절로 인한 탈락이 623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추적실패는 578가구로 47.3%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년 연속 사망과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소멸된 가구는 모두 257가구로 집계되었다. 1차년도 조사 당시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탈락 및 소멸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시도별 원표본가구 탈락 및 소멸가구 현황

(단위: 가구)

| 시도 | 탈락 가구    |          |          |          |    |       | 소멸가구 |          |                         |           |     |
|----|----------|----------|----------|----------|----|-------|------|----------|-------------------------|-----------|-----|
|    | 강력<br>거절 | 추적<br>실패 | 병원<br>입원 | 해외<br>거주 | 기타 | 소계    | 사망   | 해외<br>거주 | 조사<br>불가<br>(병원/<br>기타) | 추적실<br>실패 | 소계  |
| 전국 | 623      | 578      | 11       | 5        | 4  | 1,221 | 109  | 51       | 51                      | 46        | 257 |
| 서울 | 185      | 198      | 0        | 1        | 1  | 385   | 10   | 16       | 9                       | 13        | 48  |
| 부산 | 44       | 38       | 0        | 0        | 1  | 83    | 12   | 4        | 2                       | 3         | 21  |
| 대구 | 31       | 29       | 0        | 0        | 1  | 61    | 6    | 1        | 1                       | 1         | 9   |
| 인천 | 39       | 33       | 0        | 0        | 0  | 72    | 5    | 1        | 2                       | 8         | 16  |
| 광주 | 21       | 10       | 0        | 0        | 0  | 31    | 6    | 0        | 1                       | 3         | 10  |
| 대전 | 9        | 17       | 1        | 0        | 1  | 28    | 4    | 5        | 1                       | 0         | 10  |
| 울산 | 10       | 17       | 0        | 0        | 0  | 27    | 1    | 2        | 3                       | 1         | 7   |
| 경기 | 131      | 121      | 4        | 3        | 0  | 259   | 10   | 11       | 7                       | 10        | 38  |
| 강원 | 16       | 15       | 1        | 0        | 0  | 32    | 4    | 0        | 4                       | 1         | 9   |
| 충북 | 18       | 10       | 0        | 0        | 0  | 28    | 5    | 6        | 3                       | 1         | 15  |
| 충남 | 17       | 21       | 0        | 0        | 0  | 38    | 4    | 1        | 1                       | 0         | 6   |
| 전북 | 32       | 15       | 1        | 0        | 0  | 48    | 15   | 0        | 7                       | 0         | 22  |
| 전남 | 19       | 11       | 1        | 0        | 0  | 31    | 10   | 1        | 4                       | 1         | 16  |
| 경북 | 22       | 30       | 1        | 0        | 0  | 53    | 10   | 3        | 5                       | 2         | 20  |
| 경남 | 29       | 13       | 2        | 1        | 0  | 45    | 7    | 0        | 1                       | 2         | 10  |

원표본을 최초가구와 추가가구로 나눠 탈락 유형을 살펴보면 최초가구에서는 강력거절이 가장 큰 탈락 사유인 반면, 추가가구에서는 추적실패가 조금 더 많았다.

[표 9] 최초가구 · 추가가구 중 탈락 · 소멸가구 유형

(단위: 가구)

| 유형       | 탈락 가구    |          |          |          |    |       | 소멸가구 |          |          |          |     |
|----------|----------|----------|----------|----------|----|-------|------|----------|----------|----------|-----|
|          | 강력<br>거절 | 추적<br>실패 | 병원<br>입원 | 해외<br>거주 | 기타 | 소계    | 사망   | 해외<br>거주 | 조사<br>불가 | 추적<br>실패 | 소계  |
| 최초<br>가구 | 558      | 505      | 9        | 1        | 4  | 1,077 | 98   | 45       | 17       | 45       | 207 |
| 추가<br>가구 | 42       | 55       | 1        | 1        | 0  | 99    | 7    | 5        | 1        | 1        | 15  |

## (2) 분가표본 가구 중 탈락 · 소멸 가구 유형

분가가구 탈락 사유는 강력 거절이 2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추적실패가 18가구였다. 다시 원가구 또는 분가가구에 합가하거나 원가구원이 남아 있지 않아 소멸된 원가구 합가 가구가 29가구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10] 최초가구 · 추가가구 중 탈락 · 소멸가구 유형

(단위: 가구)

| 유형   | 탈락 가구 |       |       |       |    | 소멸가구 |       |                  |           |    |
|------|-------|-------|-------|-------|----|------|-------|------------------|-----------|----|
|      | 강력 거절 | 추적 실패 | 병원 입원 | 해외 거주 | 소계 | 사망   | 해외 거주 | 원가구 합가 / 원가구 원없음 | 분가 가구 합가* | 소계 |
| 분가가구 | 23    | 18    | 1     | 3     | 45 | 4    | 1     | 29               | 1         | 35 |

\* 분가가구 합가가구는 기존의 분가가구에서 한 번 더 분가했던 원가구원이 다시 원래 있었던 분가가구로 합가하여 소멸된 가구를 의미함

## 5) 신규 분가가구 현황

10차년도 조사시점까지 발생한 분가가구 597가구 중 517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했으며 10차년도 조사 결과 총 86가구의 신규분가 가구가 더 추가되었다.

이 중 2016년 6월 이전에 분가한 가구는 이미 분가 가구원이 새로운 가구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것이 되므로, 이 가구의 지난 해 경제상황을 모두 조사하였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이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조사표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러한 가구는 37가구이며, 이 가구는 10차년도 재정패널 조사결과 분석 과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16년 7월 1일 이후 분가하여 형성된 가구는 분가 가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원가구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것이 되므로 이 가구원의 경제상황은 원가구에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11차년도부터는 이 분가가구 또한 6개월 이상 함께 동거한 가구원으로 구성되므로, 11차년도 조사를 위해 분가가구를 찾아가 가구원 현황만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사된 가구 수도 49가구이며, 이 가구는 2018년 11차년도 조사부터 정식 표본가구로 인정된다. 따라서 10차년도 분석과정에서 이들 가구의 데이터는 제외된다.

[표 11] 분가 유형별 분가 성공 가구 수

(단위: 가구)

| 구분 | 혼인 | 직장 | 이혼 | 학업 | 기타 | 합계 |
|----|----|----|----|----|----|----|
| 전체 | 32 | 43 | 1  | 2  | 8  | 86 |
| 서울 | 4  | 13 | 0  | 1  | 0  | 18 |
| 부산 | 3  | 3  | 0  | 0  | 0  | 6  |
| 대구 | 2  | 1  | 0  | 0  | 2  | 5  |
| 인천 | 3  | 1  | 0  | 0  | 1  | 5  |
| 광주 | 3  | 5  | 0  | 0  | 0  | 8  |
| 대전 | 1  | 3  | 0  | 1  | 1  | 6  |
| 울산 | 1  | 0  | 0  | 0  | 0  | 1  |
| 경기 | 9  | 3  | 0  | 0  | 1  | 13 |
| 강원 | 0  | 3  | 1  | 0  | 0  | 4  |
| 충북 | 0  | 1  | 0  | 0  | 1  | 2  |
| 충남 | 0  | 4  | 0  | 0  | 0  | 4  |
| 전북 | 1  | 0  | 0  | 0  | 0  | 1  |
| 전남 | 1  | 2  | 0  | 0  | 1  | 4  |
| 경북 | 0  | 3  | 0  | 0  | 0  | 3  |
| 경남 | 4  | 1  | 0  | 0  | 1  | 6  |

### 3. 가중치 산출

#### 1) 1차년도(2008년) 가중치

복합표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 자료의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표본설계 가중치, 무응답에 대한 조정 그리고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사후충화 또는 레이킹(raking)에 의한 조정의 세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1차년도 재정패널 자료를 위해서는 표본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그리고 레이킹 조정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작성하였다.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본설계 가중치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보정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재정패널의 구축을 위하여 사용된 표본설계 및 모집단 정보를 통해 작성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모수의 불편 추정량(근사 불편 추정량)을 구하는 것이 가중치 산출의 목적이다.

##### (1) 표본설계

표본추출을 위한 표집틀(sampling frame)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와 2006~2008년 신규 아파트 자료를 병합하여 구성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발생한 가구 모집단의 변화를 표집틀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신규 아파트 자료의 구분 변수를 1차 충으로 정의하고 각 충으로부터 독립적인 표본을 추출함으로서 재정패널 표본을 구성하였다.

각 표집틀로부터 가구 추출을 위해서는 각 표집틀을 충화한 후 각 충내에서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충화 이단계 추출법이 사용되었다. 9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충화를 위해서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광역시도), 읍면/동부, 일반/아파트가 사용되었으며 충내의 조사구 정렬을 위해서는 시군구와 조사구내의 가구 연건평의 최빈값을 사용하였다. 신축아파트 자료의 경우, 근접 가구들을 묶어서 크기가 50~100인 일종의 조사구를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조사구의 충화를 위해서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광역시도)을 사용하였고 정렬변수로는 시군구와 대표평수를 사용하였다.

각 표집틀에서 정의된 충의 조사구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실제로 빈곤지역과 부유지역을 구분하고 이들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수의 패널을 확보하고자 해당 지역의 할당 조사구수를 늘리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추출된 조사구로부터 평균적으로 5가구씩 추출하였다.

## (2) 표본설계 가중치 및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

1차년도 원패널 5,014개 가구와 2차년도에 추가된 620개 대체가구를 합하여, 총 5,634개 가구에 표본설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620개 대체가구는 2차년도에 조사 실패한 618개 원패널 가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추가된 가구이다(실패한 가구에서 두 가구가 추가로 조사되어 차이 발생). 따라서 1차년도 가중치 산출에서는 620개 대체가구를 무응답 가구로 처리하고 원패널 5,014개 가구에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조사된  $h$ 번째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표본설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 = \frac{N_h}{n_h} \times \frac{N_{hi}}{n_{hi}}.$$

위 식에서  $N_h$ 는  $h$ 층의 모집단 조사구수,  $n_h$ 는  $h$ 층의 표본 조사구수,  $N_{hi}$ 는  $h$ 층 조사구  $i$ 의 모집단 가구수, 그리고  $n_{hi}$ 는  $h$ 층 조사구  $i$ 의 표본 가구수를 나타낸다. 1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표본설계 가중치에 응답률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되어 진다. 응답률은  $r_{hi}/n_{hi}$ 로 계산되어 지며,  $r_{hi}$ 는  $h$ 번째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응답 가구수이다. 조사된  $h$ 번째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na} = \frac{N_h}{n_h} \times \frac{N_{hi}}{n_{hi}} \times \left( \frac{r_{hi}}{n_{hi}} \right)^{-1} = \frac{N_h}{n_h} \times \frac{N_{hi}}{r_{hi}}.$$

## (3) 레이킹(raking) 가중치 보정

산출된 무응답 보정 가구 가중치( $w_{hij}^{na}$ )는 다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8년 가구 및 인구 추계 통계를 바탕으로 레이킹을 이용하여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각 지역별(제주도 제외 15개 시도) 가구주의 성(남/여), 연령(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4인 이상)이다. 통계청의 가구 및 인구 추계 통계는 소득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레이킹 변수로써 신뢰할만한 수준의 소득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 지표는 레이킹 보정 변수로 반영하지 않았다. 레이킹을 이용하여 보정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rak} = w_{hij}^{na} \exp\left(\underline{x}_{hij}' \lambda\right)$$

여기서  $\underline{x}_{hij}$ 는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을 지시변수들로 표현한 벡터이며  $\lambda$ 는

$\sum w_{hij}^{rak} x_{hij} = t_x$ 의 해이며  $t_x$ 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8년 각 레이킹 변수들의 추계 값을 나타낸다. 레이킹을 통한 가중치의 보정 결과 2008년 추계 자료와의 벤치마킹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중치가 크게 나타나는 관측치가 존재하여 가중치의 최댓값을 9,000으로 제한하였다. 가중치가 9,000을 초과하는 극단 관측치들의 경우 가중치를 9,000으로 조정하고, 레이킹 보정 가중치에서 9,000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벤치마킹범주(지역\*가구주 성\*가구주 연령\*가구원 수) 내의 관측치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 2) 2차년도(2009년) 가중치

재정패널 2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2개년도(2008년과 2009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2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1차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 $w_{hij}^{na}$ )에 2차년도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과 2009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서 계산되어 진다.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위해서는 2009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와 2008년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응답가구의 응답확률을 예측하였다. 2009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2008년에 작성된 각 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 $w_{hij}^{na}$ )를  $w_{2008}$ 이라 표기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된 예측 응답확률을  $\hat{p}_{2009}$ 라 할 때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가중치는

$$w_{2009} = w_{2008} \times \hat{p}_{2009}^{-1}$$

로 표현된다. 실제  $\hat{p}_{2009}$ 의 예측을 위하여 적합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log\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text{가구주성별}\beta_1 + \text{가구원수}\beta_2 \\ + \text{가구주연령}\beta_3 + \text{지역}\beta_4 + \text{가구연간소득총액}\beta_5$$

이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0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2009년 추계 자료의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1차년도에 사용된 레이킹 기법이 시용되었다. 2009년 레이킹을 위하여 지역과 가구주의 성,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2,500으로 제한하였다.

## (2)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와 분가가구(2008년 6월 이전 분가)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09년 추계 자료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각 가구형태별 1단계 가중치 산출을 살펴보면, 먼저 2차년도에 조사된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의 경우,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 )를 사용하고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1단계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무응답 보정 방법은 종단면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는 2009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사용했으며, 2009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09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로는 원패널 가구의 경우 종단면과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2008년 자료가 없는 대체가구는 대응되는 원패널 가구(2차년도 조사실패 가구)의 2008년도 5개 변수(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가구연간소득총액)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분가가구의 경우, 분가사유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였다.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원가구의 당해년도 무응답이 보정된 1단계 가중치의 1/2을 부여하였고 기타 사유의 분가가구 경우, 원가구의 당해년도 무응답이 보정된 1단계 가중치를 그대로 부여하였다. 또한 분가사유가 결혼인 35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12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를 조사 성공한 23가구에 부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가사유가 결혼인 35가구를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내에서 2차년도 무응답 가구의 가중치를 응답 가구에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기존가구와 분가가구의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0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 3) 3차년도(2010년) 가중치

재정패널 3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3개년도(2008년~2010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1,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3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 2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가중치 산출에는 1차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 $w_{hij}^{na}$ )를 사용하였다. 3차년도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2차년도 종단면의 무응답 보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2010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했으며, 2010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 3개년도 모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 지역, 가구주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3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3,300으로 제한하였다.

#### (2)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2008년 6월 이전 분가) 그리고 신규분가(2008년 7월 ~ 2009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0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기존가구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가구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2010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010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10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다. 기존분가의 경우, 3차년도에 모든 가구가 응답하여 2차년도에 부여한 횡단면 1단계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1,700으로 제한하였다.

#### 4) 4차년도(2011년) 가중치

재정패널 4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4개년도(2008년~2011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4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4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4개년도(2008년~2011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1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4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5,000으로 제한하였다.

##### (2)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4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2009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2009년 7월 ~ 2010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1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가구의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 )를 사용하고, 기존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확률은 기존가구와 기존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2011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011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11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

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4,000으로 제한하였다.

## 5) 5차년도(2012년) 가중치

재정패널 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5개년도(2008년~2012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5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5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5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5개년도(2008년~2012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5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8,000으로 제한하였다.

### (2)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5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2010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2010년 7월 ~ 2011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2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

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가구의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 )를 사용하고, 기존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화률은 기존가구와 기존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2012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012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12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3,000으로 제한하였다.

## 6) 6차년도(2013년) 가중치

재정패널 6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6개년도(2008년~2013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6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6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6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6개년도(2008년~2013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3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3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다만, 연령 범주를 4개(39세 미만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에서 2개(50세 미만 /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 (2)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6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2011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2011년 7월 ~ 2012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3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가구의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 )를 사용하고, 기존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학률은 기존가구와 기존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2013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013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13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3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 (3) 6차년 종단면, 횡단면 가중치 산출을 위한 레이킹 방안 변경

기존 1차~5차까지 레이킹 방안을 위하여 고려한 벤치마킹 정보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시도) 가구주의 성(남/여), 연령(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4인 이상)이다. 그리고 레이킹 가중치 보정을 통한 벤치마킹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중치가 크게 나타나는 관측치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차수마다 가중치의 분포를 확인하여 관측치의 최대값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6차년도 레이킹 방안을 위하여 고려한 벤치마킹 정보 중 가구주의 연령의 범주를 기존의 4개의 범주(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에서 2개의 범주(50세 미만/50세 이상)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4개의 범주를 사용하는 방안보다 가중치의 분포에서 지나치게 큰 관측치가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레이킹 방안의 적용 후 관측치의 최대값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7) 7차년도(2014년) 가중치

재정패널 7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7개년도(2008년~2014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

중치와 7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7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7개년도(2008년~2014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여부(7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준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4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4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 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최종 가중치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6차년도의 분포 형태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2) 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7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7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준 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준분가 가구(2012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 가구(2012년 7월 ~ 2013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4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준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 )를 사용하고, 기준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 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준가구와 기준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4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2014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준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준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신규분가 가구는 분가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

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분가 가구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4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수는 6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8) 8차년도(2015년) 가중치

재정패널 8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8개년도(2008년~2015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8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8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8개년도(2008년~2015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여부(8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5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5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최종 가중치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7차년도의 분포 형태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2) 8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8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8차년도(2015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

저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 가구(2013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 가구(2013년 7월 ~ 2014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5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 )를 사용하고, 기존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5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2015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신규분가 가구는 분가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분가 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5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수는 7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9) 9차년도(2016년) 가중치

재정패널 9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9개년도(2008년~2016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9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9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9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9개년도(2008년~2016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여부(9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6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6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 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9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30,000으로 제한하였다.

## (2) 9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9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9차년도(2016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 가구(2014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 가구(2014년 7월 ~ 2015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6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 )를 사용하고, 기존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6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2016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신규분가 가구는 분가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분가 가구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6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수는 8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10) 10차년도(2017년) 가중치 산출

### (1) 10차년도 가중치 설계 방향

재정패널 10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10개년도(2008년~2017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10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2) 10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10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0개년도(2008년~2017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여부(9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준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7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7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 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10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35,000으로 제한하였다.

### (3) 10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10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0차년도(2017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준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준분가 가구(2015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 가구(2015년 7월 ~ 2016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7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준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 $w_{hij}$ )를 사용하고, 기준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준가구와 기준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7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2017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준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준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신규분가 가구는 분가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분가 가구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7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수는 9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제 3 장 실사 진행 과정

### 1. 실사 준비 과정

#### 1) 조사표 설계

2017년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2016년에 실시한 9차년도 조사표를 골격으로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최종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확정한 조사표는 관련 학계의 자문 교수로부터 최종 감수를 거쳤다. 많은 부분의 문항을 변경하지 않는 대신, 전년도 조사 결과 나타난 응답자나 조사원의 조사표 수정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전년도 조사에서 응답자와 조사원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2) 조사원 선발

2017년 재정패널 조사에 최종적으로 투입된 조사원은 모두 75명이다. 전년도 재정패널 조사에 참여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조사원 73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표 12] 지역별 투입 조사원 수

(단위: 명)

| 지역별   | 관할 지역          | 2017년 투입 조사원 | 유경험자 | 신규 충원 |
|-------|----------------|--------------|------|-------|
| 서울 본사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32           | 32   | -     |
| 부산 지사 | 부산, 울산, 경남     | 17           | 17   | -     |
| 대구 지사 | 대구, 경북         | 9            | 8    | 1     |
| 광주 지사 | 광주, 전남, 전북     | 10           | 9    | 1     |
| 대전 지사 | 대전, 충남, 충북     | 7            | 7    | -     |
| 총계    |                | 75           | 73   | 2     |

#### 3) 조사원 교육

재정패널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원의 대부분은 재정패널조사 경력이 9년 이상인 숙련된 조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설문지 변경사항이나 제도 개편에 따른 조사방식의 변화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 시작 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10차년도에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 4) 가구 대상 안내편지 및 공문발송

조사 대상 가구에는 조사 시작 일주일 전 조사에 대한 안내편지 및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안내편지와 공문에는 조사에 대한 의의 및 10차년도 조사 참여 독려, 소득 증빙서류 제공 준비와 그 혜택을 상기시켜 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 5) 조사 도구 제작

재정패널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응답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사 도구를 제작해서 활용하였다.

- ① 설문지 : 가구용 조사표와 가구원용 조사표 두 종류의 설문지 제작
- ② 조사원 신분증·명함 :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해 제작. 신분증에는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의 직인과 조사원의 사진을 인쇄하여 응답자가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③ 사전 안내편지 : 재정패널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
- ④ 비밀보장각서 : 조사가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된다는 확인을 조사원이 서명하여 응답자에게 제출
- ⑤ 조사지침서 및 조사원 가이드 : 조사진행 지침과 용어에 대한 해설을 명기
- ⑥ 보기카드 : 조사 진행 시 참고 도구로 활용
- ⑦ 소득공제 서류 양식 : 응답자의 소득공제 내역을 필사하는 경우를 대비해 빈 양식을 배포
- ⑧ 기타 관련 안내 자료 : 응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설명자료를 리플렛의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

#### 6) 기타 조사 홍보 및 안내

##### (1) 080 안내전화(수신자부담 무료전화) 설치 및 운영

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조사 대상 가구의 문의에 곧바로 응대하기 위해 수신자 부담

무료전화를 설치하고 상담전화는 KANTAR의의 담당자가 직접 수신하여 응대하였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안내

재정패널조사 공식 홈페이지(panel.kipf.re.kr)와 KANTAR 홈페이지(www.tnsglobal.co.kr)에 조사 안내문을 올려 조사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KANTAR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패널이 이사를 할 경우 그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패널 관리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전 안내편지 발송

조사 대상 가구에 재정패널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현장 실사 시작 1주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4) 사전 전화 컨택

가능한 패널들이 안내문을 받는 시점인 5월초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사전 전화컨택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 2. 실사 진행 과정

### 1) 주별 진행 상황

재정패널 조사의 실사는 5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되었으며, 5월 한 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점을 감안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컨택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실사 초반인 6월에는 다소 높은 진행율을 보였고, 본격적으로 실사가 진행된 7월에 접어들며 꾸준한 속도로 실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 2017년도 실사 진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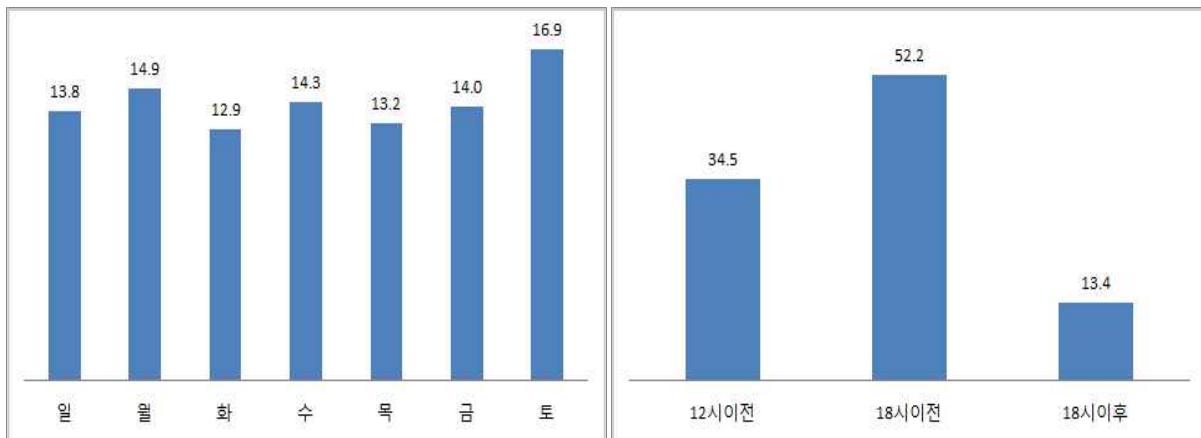


\* 패널 유지율은 최초표본가구(최초표본+추가표본) 조사 성공률을 의미하며, 산출방식은 유효표본유지율임.

### 2) 조사 진행 요일 및 시간대 분포

전반적으로 모든曜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토요일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시간대의 경우 12시~18시 사이가 52.2%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늦은 시간인 6시 이후보다는 오전 시간대에 조사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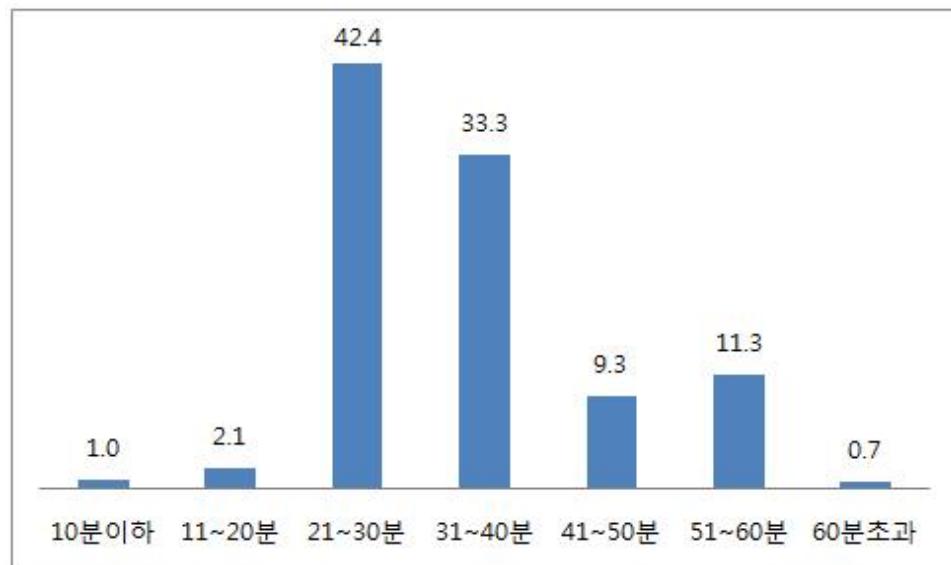
[그림 2] 조사 요일 및 시간대(%)



### 3) 조사 소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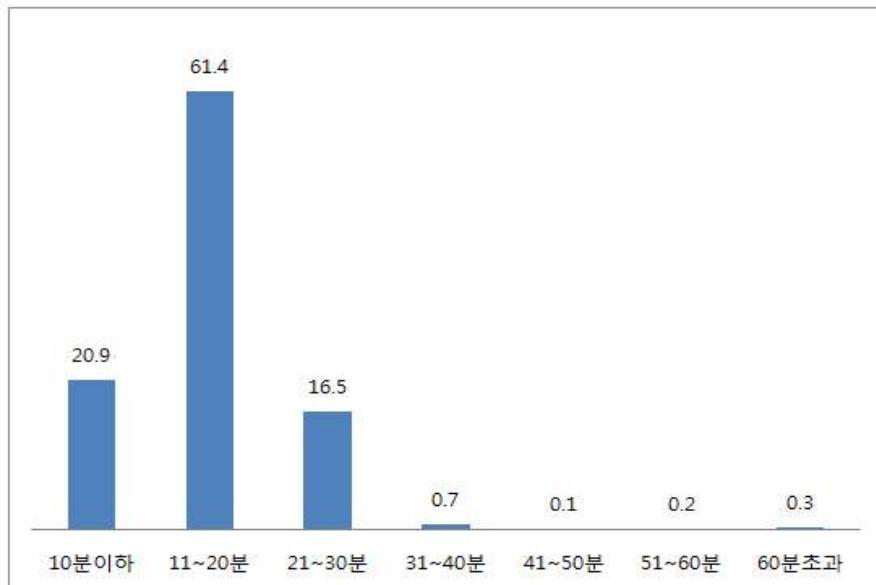
가구 조사표의 평균 조사 시간은 약 37.9분으로 지난 해 평균시간(36.1분)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유사하나 살짝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21~30분'이 42.4%로 가장 많았고, '31~40분'이 33.3%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림 3] 가구 조사표 소요시간(%)



가구원 조사표의 평균 조사 시간은 약 17.9분으로 나타나 지난해(17.1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구원 조사표는 해당되는 가구원에게만 조사하고 가구 조사표에 비해 분량도 적기 때문에, 많은 경우 20분 내에서 모두 조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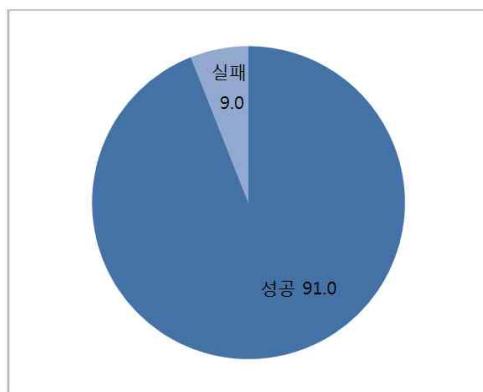
[그림 4] 가구원 조사표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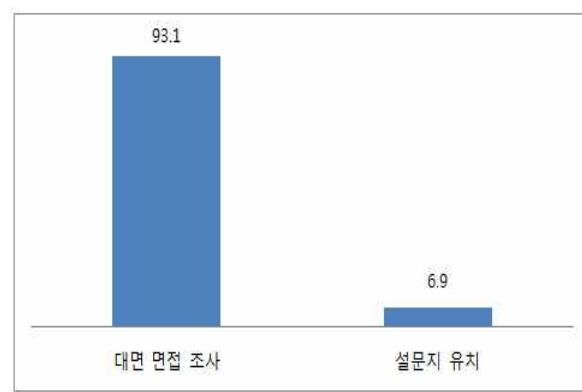
#### 4) 납세자 의식 조사

가구원 의식조사의 경우 7,394명인 91.0%의 비율로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성공한 설문 가운데 6,884개인 93.1%는 대면 면접 조사를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6.9%는 설문지를 유치하여 진행하였다.

[그림5] 납세자 의식조사 설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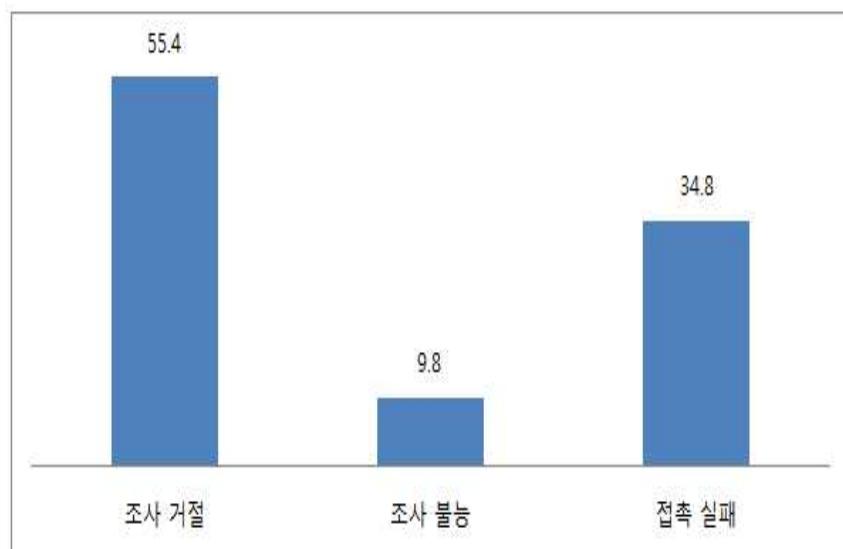
[그림6] 납세자 의식조사 설문진행방법(%)



가구원 의식조사 실패 사유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실패한 471명의 가구원 중에 261명인 55.4%는 조사를 거절하였으며 9.8%는 가구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조사가 불능하였고, 나머지 34.8%는 거주하고 있으나 출장이나 여행,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하여 접촉이 불가능하

여 조사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납세자의식조사 실패 사유(%)



## 5) 조사 방법

가구 조사표는 응답자의 요청이나 가구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설문지를 유치해서 조사한 경우는 총 3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38건)와 비슷하였다. 유치조사로 진행되는 설문지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방문하여 수거 시에 반드시 설문지를 검토하여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한 설문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설명해주고 응답을 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가 해를 거듭하면서 조사에 대한 누적되는 피로감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 등으로 거절 의사를 보이는 가구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거절 의사를 표시한 가구, 그리고 가구원의 개인적인 사정 상 수시로 집을 비워 조사원과 만나기 힘든 경우는 응답자의 요청에 의해 우편조사를 진행하였다. 우편조사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응답자에게 보내고 응답자가 작성한 후 다시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응답자가 작성한 응답을 검토 후 전화를 통해 부정확하고 누락된 응답을 확인하는 과정을 모두 거쳤다. 올해 진행된 우편조사는 총 18건이었다. 유치조사와 우편조사 외의 나머지 모든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한 상태에서 직접 진행되었다.

[표 13] 지역별 유치조사 및 우편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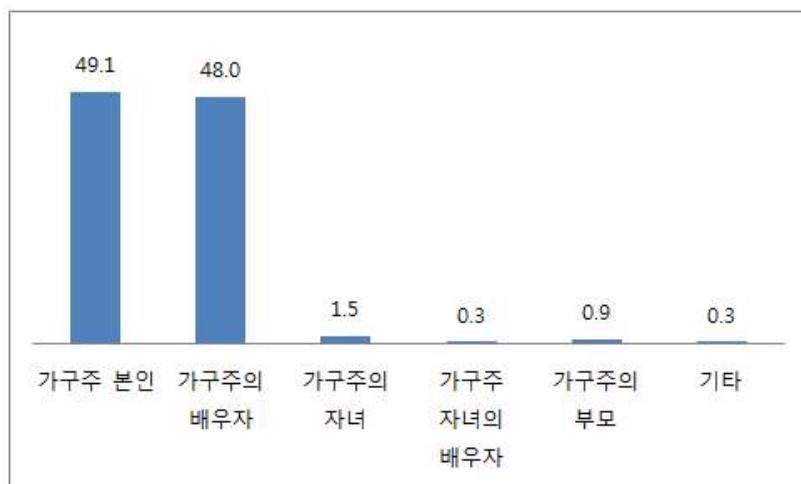
(단위: 가구)

| 구분 | 유치조사 |      | 우편조사<br>원가구 | 계 |
|----|------|------|-------------|---|
|    | 원가구  | 분가가구 |             |   |
| 서울 | 31   | 6    | 13          | 1 |
| 부산 | -    | -    | -           | - |
| 광주 | -    | -    | 2           | - |
| 대구 | 1    |      | 1           | - |
| 대전 | -    | -    | 1           | - |
| 계  | 32   | 6    | 17          | 1 |

### 6) 가구 조사표 응답자 선정

가구 조사표는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주 본인(49.1%)이나 가구주의 배우자(48.0%)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한 경우가 전체 표본의 97.1%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림 8] 가구 조사표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 7) 가구원 조사표 응답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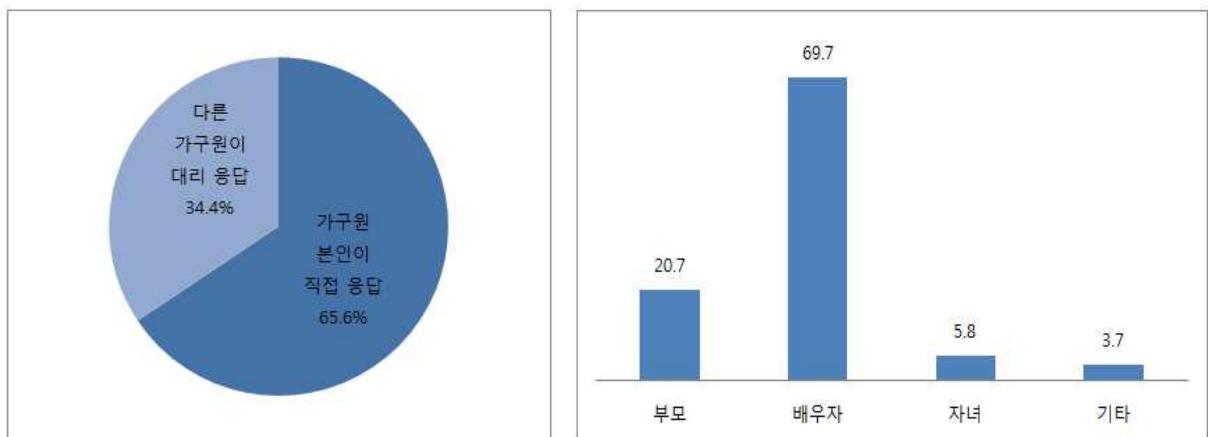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사람은 총 7,86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사람 중 실제 소득은 없으나 실사 관리 차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가구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인 소득 가구원 숫자와 조사 성공률은 데이터 클리닝을 거쳐

며 달라질 수 있다.

가구원 조사표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응답한 경우가 65.6%였으며, 소득자의 배우자 등 소득을 관리하는 타가구원이 응답한 사례가 34.4%로 나타났다.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조사표는 가구원 소득활동 상황과 소득과 같은 실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는 대리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을 관리하는 가구원이나 타가구원 명의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가구원 등이 해당된다. 가구원 설문지의 대리 응답 비율은 작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어, 최대한 본인 응답을 받기 위해 조사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조사표 상에는 대리 응답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소득자 본인의 동석 하에 조사가 진행되거나 대리 응답자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전화를 통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타 가구원이 대신 응답하였다고 표기되었다고 해서 조사 품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9] 가구원 조사표 본인 응답 여부 및 대리 응답 시 소득 가구원과의 관계(%)



### 3. 소득세 및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 1) 증빙서류 수집 목적

가구원 조사표에서는 연간 소득, 연금·보험 지출 및 소득, 소득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역을 모든 응답자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소득공제 내역은 각 항목별로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회상해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소득공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하는 것도 조사 목적에 포함시켰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일부 항목(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이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여 다수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공제내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빙서류의 수집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 2) 수집 대상 서류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연간 소득내역과 공제내역, 결정세액 등의 정보가 들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2016년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조사하므로 2017년 초 근무처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수집대상이 되었다.

종합소득 신고자는 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모든 서류를 다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명세서], 그리고 [세액공제명세서]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2017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므로 이 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수집 대상이 되었다. 단, 방문판매나 보험모집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집 서류에 포함시켰다.

#### 3) 2016년도 귀속 서류 수집 현황

10차년도 조사 시작 시 소득 증빙서류 수집 목표는 전체 가구의 40.5%였다. 최종적으로 1,967가구에서 2,340건의 서류가 수집되어 2016년 7월 이후 분가 가구 32가구를 제외한 유효 표본 4,790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 수집율은 41.1%로 수집율 목표를 달성하였다.

한편 과년도(2015년 이전) 귀속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없었다. 과년도 서류 제출은 매년 감

소 추세를 보여 왔는데, 10년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당해년도 서류 제출이 증가했고, 혹 과년도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가구원들도 이미 대부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3] 소득 증빙서류 수집 현황

(단위: 건)

| 구분                | 수량*   |
|-------------------|-------|
| 2016년도 귀속서류 수집 건수 | 2,340 |
| 제출 가구원 수          | 2,333 |
| 제출 가구 수           | 1,967 |
| 근로소득 제출건수         | 1,939 |
| 종합소득 제출건수         | 401   |

\* 서류 건수는 최종 수집된 서류의 수량을 의미하며, 가구와 가구원 수는 해당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기준으로 집계함.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가구원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있고, 한 가구원이 서류를 2장 제출한 경우도 있으므로 서류 제출 건수와 제출 가구수, 제출 가구원 수가 서로 다르게 됨.

그런데 모든 가구가 증빙서류 수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가 필요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소득자나 금융/임대소득자 중에서도 소득신고를 한 가구원만 수집 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수집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수집율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대상 66.0%의 가구에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신고 가구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은 60.7%가 서류를 제출하였고,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은 42.8%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서류 제출을 꺼리는 종합소득자의 경우도 지속적인 설득과 신뢰감 제고 노력을 통해 꾸준히 40% 이상의 제출율을 보이고 있다.

[표 14] 소득 증빙서류 수집율

(단위: 가구, 건, %)

| 구분              | 해당 case       | 제출건수  | 수집율(%) | [참고]<br>2016년 수집율     |
|-----------------|---------------|-------|--------|-----------------------|
| 전체 유효표본 가구      | 4,790         | 1,967 | 41.1   | 40.2<br>(1,943/4,832) |
|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 2,980         | 1,967 | 66.0   | 65.2<br>(1,943/2,979) |
| 가<br>구<br>원     |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 | 3,196 | 1,939  | 61.3<br>(1,923/3,137) |
|                 |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 937   | 401    | 40.6<br>(374/921)     |

\* 2016년 수집율의 괄호 안 수치는 '수집 건수/해당 케이스 숫자'를 의미

9차년도에 이어 10차년도에 연속 제출한 가구원은 1,943명으로 가구원 설문 응답자의 24.7%였으며, 계속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은 5,302명으로 67.4%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제출한 가구원이 390명으로 5.0%, 9차년도에는 제출했지만 올해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은 230명으로 2.9%였다.

[표 15] 소득 증빙서류 제출 현황

(단위: 명, %)

|         | 계속 제출 | 계속 비제출 | 신규 제출 | 신규 비제출 | 총합계   |
|---------|-------|--------|-------|--------|-------|
| 가구원수(명) | 1,943 | 5,302  | 390   | 230    | 7,865 |
| 비율(%)   | 24.7  | 67.4   | 5.0   | 2.9    | 100.0 |

구체적인 서류 수집 여부와 수집 유형을 살펴보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가구원은 2,333명,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회상에 따라 응답하였다는 가구원이 1,771명이었다. 이 밖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해당사항이 없다'는 가구원은 3,761명으로 전체 가구원 설문 응답자의 47.8%였다.

[표 16] 소득 증빙서류 수집 유형

(단위: 명, %)

|         | 회상에 따라 응답 및 증빙 자료 확인 후 기입 | 증빙자료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합계    |
|---------|---------------------------|---------|---------|-------|
| 가구원수(명) | 1,771                     | 2,333   | 3,761   | 7,865 |
| 비율(%)   | 22.5                      | 29.7    | 47.8    | 100.0 |

## 제 4 장 재정패널 표본 특성

### 1. 조사 결과 분석 기준

#### 1) 표본가구 구분

2017년 재정패널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표집된 표본가구 수는 4,839개로 이 중 2016년 7월 이후 신규 분가가구인 49가구를 제외하면 유효 표본수는 4,790개이다. 2017년 표본가구는 2015년(4,839가구)과 2015년(4,819가구)에 비해 늘어났는데, 이는 원가구에서 파생된 분가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원표본 가구의 이탈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표집된 4,839개 가구의 특성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2008년 1차년도 조사에서 표집된 5,014가구 중 2008~2017년 연속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총 3,488개 가구이다. 이들 가구는 10개 년도에 걸치는 종단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 표본 집단이다. 한편 2009년에 추가표본으로 조사된 620가구 중 2009~2017년에 모두 추적 성공한 477가구는 9개년도(2009~2017년)에 걸친 종단적 분석만 가능하다.

[표 17] 최초가구·추가가구 연속 성공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최초가구 | 5,014 | 4,396 | 4,122 | 3,954 | 3,838 | 3,754 | 3,697 | 3,629 | 3,564 | 3,488 |
| 추가가구 | -     | 620   | 575   | 541   | 519   | 509   | 501   | 493   | 486   | 477   |
| 원가구  | 5,014 | 5,016 | 4,697 | 4,495 | 4,357 | 4,263 | 4,198 | 4,122 | 4,050 | 3,965 |

[표 18] 분가가구 연속 성공 수

(단위: 가구)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2차년도 분가가구 | 80    | 67    | 65    | 62    | 61    | 61    | 60    | 59    | 56    |
| 3차년도 분가가구 | -     | 70    | 66    | 60    | 58    | 58    | 55    | 54    | 53    |
| 4차년도 분가가구 | -     | -     | 94    | 84    | 79    | 77    | 75    | 73    | 72    |
| 5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72    | 70    | 69    | 66    | 64    | 62    |
| 6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     | 73    | 69    | 66    | 65    | 63    |
| 7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     | -     | 68    | 64    | 63    | 61    |
| 8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     | -     | -     | 70    | 69    | 65    |
| 9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     | -     | -     | -     | 70    | 64    |

분가 가구의 경우 기존 분가가구 517가구와 2016년 6월 이전 분가가구 37가구, 2016년 7월 이후 분가가구 39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다. 다만 7월 이후 분가가구는 유효 표본에서 제외되며, 횡단면 분석에 활용되는 분가가구 표본 수는 554개이다.

분석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치가 다르며 이에 따라 분석에 사용되는 유효 표본 수도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가중치 보정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정패널 조사 자료에서는 횡단 가중치와 종단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가중치 보정 단계를 거쳐 나타난 결과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가중치 보정을 하지 않은 기초 데이터(raw data)의 분석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난다.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사용자들이 분석에 앞서 가중치를 사용을 검토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본 기초분석 보고서에서는 기초 데이터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2016년 조사와 비교한 분석표 역시 두 데이터 모두 가중치 보정을 하지 않은 기초 데이터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본 기초분석보고서에서 분석한 수치나 내용은 연구자들의 자료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추후 가중치 보정 여부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짐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표본가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 1)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2016년과 2017년 전체의 가구주 성별, 연령대 비율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60대 이상 연령대의 가구주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

|       | 성별   |      | 연령대    |      |      |      |       |
|-------|------|------|--------|------|------|------|-------|
|       | 남자   | 여자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 2016년 | 77.8 | 22.2 | 2.0    | 11.9 | 23.4 | 25.3 | 37.3  |
| 2017년 | 77.1 | 22.9 | 2.5    | 12.3 | 23.4 | 25.0 | 36.8  |

## 2) 가구주의 학력

전체 결과를 놓고 보면 2016년과 2017년 조사 간에 가구주의 학력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20] 가구주의 학력

(단위: %)

|       | 미취학<br>(안받음) | 중학교<br>재학/졸업 이하 | 고등학교<br>재학/졸업 | 대학(2년제+4년제)<br>재학/졸업 | 대학원<br>재학/졸업 |
|-------|--------------|-----------------|---------------|----------------------|--------------|
| 2016년 | 3.9          | 20.8            | 31.8          | 38.6                 | 4.9          |
| 2017년 | 3.6          | 20.7            | 31.6          | 39.2                 | 4.9          |

## 3)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직전년도 12월 말 기준)

전반적으로 2017년과 2016년 가구주 종사상 지위 비율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1]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 임금<br>근로자<br>(상용직) | 임금<br>근로자<br>(임시직) | 임금<br>근로자<br>(일용직) | 고용원이<br>없는<br>자영업자 | 고용원을<br>둔 사업주 | 무급 가족<br>종사자 | 무직/주부/학생<br>(종사상 지위<br>해당 없음) |
|-------|--------------------|--------------------|--------------------|--------------------|---------------|--------------|-------------------------------|
| 2016년 | 41.8               | 4.8                | 5.7                | 21.5               | 4.1           | 0.7          | 21.5                          |
| 2017년 | 41.0               | 5.5                | 5.7                | 21.0               | 4.0           | 0.5          | 22.2                          |

## 4) 가구주 변경 여부

2016년 한 해 동안 가구주가 변경된 가구는 1.8%로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가구주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 변경 사유는 사망(37.9%)과 가구원 전출입(29.9%)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 22] 가구주 변경 여부

(단위: %)

|       | 변경 여부 |         | 변경 사유  |      |         |      |
|-------|-------|---------|--------|------|---------|------|
|       | 변경됨   | 변경되지 않음 | 경제적 사유 | 사망   | 가구원 전출입 | 기타   |
| 2016년 | 2.4   | 97.6    | 22.6   | 39.6 | 26.4    | 11.3 |
| 2017년 | 1.8   | 98.2    | 11.5   | 37.9 | 29.9    | 10.3 |

### 3. 표본가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 1) 가구원 수

본 조사에서 가구는 2016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던 가족으로 정의한다. 가구원은 가족과 함께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6개월 이상 같이 생활한 사람으로 정의했고, 다른 가구에 사는 기러기 아빠,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 및 친척은 가구원에 포함시켰으며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한 경우와 원양 어선이나 기숙사 등 수용시설에 있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이 밖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함께 살게 된 가족은 간단한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했으나 가구원으로 보지 않았다.

[표 23] 가구원의 수

(단위: %)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2016년 | 18.9 | 26.0 | 21.1 | 26.2 | 7.8   |
| 2017년 | 19.7 | 26.6 | 20.4 | 25.7 | 7.5   |

#### 2)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가구원 중에서는 여자의 비중이 약간 더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가구원의 비중이 가장 높고 19세 이하 가구원이 그 다음으로 많이 조사되었다.

[표 24]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

|       | 성별   |      | 연령대    |      |      |      |      |        |
|-------|------|------|--------|------|------|------|------|--------|
|       | 남자   | 여자   | 19세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 2016년 | 48.3 | 51.7 | 21.8   | 11.2 | 11.5 | 17.0 | 16.2 | 22.3   |
| 2017년 | 48.2 | 51.8 | 21.2   | 11.4 | 11.1 | 16.5 | 16.3 | 23.5   |

### 3) 가구원의 학력

전체 가구원 중 대학(2년제 포함) 재학/졸업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35.0%, 고등학교 재학/졸업의 학력을 지닌 가구원이 28.5%로 나타났다.

[표 27] 가구원의 학력

(단위: %)

|       | 미취학<br>(안 받음 포함) | 초등학교<br>재학/졸업 | 중학교<br>재학/졸업 | 고등학교<br>재학/졸업 | 전문대·대학<br>재학/졸업 | 대학원<br>재학/졸업 |
|-------|------------------|---------------|--------------|---------------|-----------------|--------------|
| 2016년 | 8.4              | 15.2          | 10.4         | 28.7          | 34.3            | 3.1          |
| 2017년 | 8.1              | 14.7          | 10.6         | 28.5          | 35.0            | 3.1          |

### 4)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가구원 중 무직/주부/학생 등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2.7%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29.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8]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 임금<br>근로자<br>(상용직) | 임금<br>근로자<br>(임시직) | 임금<br>근로자<br>(일용직) | 고용원이<br>없는<br>자영업자 | 고용원을<br>둔 사업주 | 무급 가족<br>종사자 | 무직/주부/학생<br>(종사상 지위<br>해당 없음) |
|-------|--------------------|--------------------|--------------------|--------------------|---------------|--------------|-------------------------------|
| 2016년 | 24.7               | 4.0                | 3.0                | 10.5               | 1.8           | 2.0          | 54.0                          |
| 2017년 | 25.2               | 4.6                | 3.4                | 10.5               | 1.8           | 1.9          | 52.7                          |

## 5) 취업 가구원 수

가구 내에 취업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가 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업 가구원 수가 2명인 가구가 33.5%로 나타났다. 취업 가구원 수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표 29] 취업 가구원 수

(단위: %)

|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이상 |
|-------|------|------|------|-----|------|
| 2016년 | 16.1 | 46.2 | 31.7 | 4.9 | 1.1  |
| 2017년 | 15.6 | 44.6 | 33.5 | 5.3 | 1.0  |

## 제 5 장 가구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

가구 조사표는 가구원 현황과 주택·자동차 현황, 연간 소득 및 소비 지출, 자산 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 지출 금액은 지출의 특성에 따라 월평균 금액과 연간 금액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 등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 1. 표본가구의 경제적 상황

#### 1) 가구 평균 연소득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가구의 총소득을 각 가구원 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토지/주택/상가 및 사무실/기타),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금/보험 소득, 기타 소득(이전소득 포함), 양도소득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본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67.6%,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31.8%였다.

재정패널 표본가구 전체의 평균 연간소득을 구하기 위해 가구원 조사표에서 조사된 연간 소득의 총금액을 총 유효표본 가구 수(4,790가구)로 나누어 보았다. 이때 소득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무응답 가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패널 조사 표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722.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근로 소득이 평균 3,140.5만원이었으며, 사업소득이 996.4만원으로 나타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0] 소득 유형별 가구 평균 연소득

(단위: %, 만원)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br>평균 금액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근로소득        | 67.6     | 4,643.0 | 3,140.5        |
| 사업소득        | 31.8     | 3,135.9 | 996.4          |
| 부동산<br>임대소득 | 토지       | 0.8     | 776.5          |
|             | 주택       | 6.7     | 1,231.3        |
|             | 상가 및 사무실 | 3.0     | 2,248.2        |
|             | 기타       | 0.1     | 2,035.0        |
| 이자 및 배당소득   | 4.2      | 371.3   | 15.5           |

|              |           |      |         |         |
|--------------|-----------|------|---------|---------|
| 기타소득         | 타가구 이전소득  | 18.6 | 533.2   | 99.3    |
|              | 노인요양특별급여  | 0.0  | 780.0   | 0.3     |
|              | 그 외 기타소득  | 4.6  | 1,377.5 | 63.6    |
| 양도소득<br>/손실  | 양도소득      | 0.2  | 1,980.4 | 3.7     |
|              | 양도손실      | 0.1  | 1,262.5 | 1.1     |
| 보험급여         | 사회보험 급여   | 19.1 | 556.3   | 106.4   |
|              | 민간보험 급여   | 7.2  | 406.8   | 29.4    |
| 정부지원         | 정부지원 현금소득 | 21.0 | 0.7     | 0.2     |
| 퇴직관련<br>급여   | 특수직 퇴직연금  | 2.5  | 2,885.3 | 73.5    |
|              | 특수직 퇴직일시금 | 0.1  | 5,200.0 | 5.4     |
|              | 개인형 퇴직연금  | 0.0  | 1,200.0 | 0.5     |
|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           | 0.8  | 3,791.4 | 29.3    |
| 연간 총소득*      |           |      |         | 4,722.0 |

\* 가구 연간 총소득은 양도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임.

## 2) 소득 가구원 수

전체 가구의 45.6%에서는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한 명으로 나타났고 2명인 경우가 43.4%로 1명 또는 2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1] 소득 있는 가구원 수

(단위: %)

| 구분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  | 1.0 | 45.6 | 43.4 | 8.1 | 1.5 | 0.3   |

## 3) 가구 자산 및 부채

### (1) 금융자산

금융자산 중에는 금융기관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7.8%로 가장 컼으며, 전체 표본가구의 금융자산 평균 총액은 4,191.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2] 가구 금융자산

(단위: %, 만원)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br>평균 자산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 77.8  | 3,974.1 | 3,058.4        |
| 펀드 가입 금액       | 3.9   | 2,852.4 | 109.1          |
| 채권 보유 금액       | 0.4   | 9,612.0 | 39.7           |
| 주식 보유 금액       | 6.2   | 5,818.0 | 358.3          |
|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 13.5  | 2,554.0 | 337.3          |
| 연금저축           | 8.2   | 2381.7  | 191.5          |
| 빌려준 돈          | 0.9   | 5,058.6 | 43.9           |
| 기타 금융자산        | 0.9   |         | 6,385.9        |

## (2)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중에는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으며, 전체 표본가구의 부동산자산 평균 총액은 2억 8,137.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3] 가구 부동산자산

(단위: %, 만원)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br>평균 자산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거주 자가주택 시가총액    | 61.2  | 26,013.1 | 15,742.4       |
|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 12.5  | 33,134.6 | 4,059.5        |
| 주택 외 보유 부동산(토지) | 13.7  | 23,816.6 | 3,165.3        |
| 주택 외 보유 부동산(건물) | 3.8   | 56,766.3 | 2,089.8        |
| 주택 전월세 보증금(거주)  | 29.8  | 9,806.2  | 2,889.8        |
| 주택 전월세 보증금(비거주) | 0.2   | 5,581.8  | 12.7           |
| 비주택 전월세 보증금     | 4.5   | 4,049.2  | 178.3          |
| 부동산 자산 총액       |       |          | 28137.8        |

## (3)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고가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타 자산 보유 가구 수가 적어 전체 표본가구의 평균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본가구는 평균적으로 242.9만원의 기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34] 가구 기타자산

(단위: %, 만원)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br>평균 자산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보유 회원권(골프, 콘도 등) | 0.2   | 4,477.8  | 8.3            |
| 농기계, 가축          | 1.6   | 4,073.5  | 64.8           |
| 선박, 건설 중장비       | 0.3   | 9,161.5  | 24.6           |
| 귀금속              | 11.5  | 406.2    | 46.2           |
| 기타 자산            | 0.5   | 19,140.0 | 98.9           |
| 기타 자산 총액         |       |          | 242.9          |

## (4) 부채 및 연간 상환액

부채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세금·보증금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4,550.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5] 가구 부채

(단위: %, 만원)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br>평균 부채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 2.0   | 6,646.4  | 134.6          |
| 학자금 대출       | 1.2   | 1,538.9  | 17.8           |
|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 16.8  | 10,950.9 | 1,824.0        |
| 금융기관 대출      | 11.4  | 7,130.2  | 810.6          |
| 신용카드 대출      | 1.3   | 1,865.2  | 23.5           |
| 전세금/보증금      | 13.5  | 12,702.4 | 1,699.1        |
| 기타           | 1.0   | 4,301.1  | 40.9           |
| 부채 총액        |       |          | 4,550.5        |

연간상환액은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과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상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 연평균 194.4만원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가구 부채 연간 상환액

(단위: %, 만원)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br>평균 상환액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상환 | 2.0   | 395.9 | 8.0             |
| 학자금 대출 상환       | 1.2   | 182.5 | 2.1             |
|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상환 | 16.8  | 720.4 | 119.6           |
| 금융기관 대출 상환      | 11.4  | 542.0 | 61.5            |
| 신용카드 대출 상환      | 1.3   | 247.1 | 3.1             |
| 상환 총액           |       |       | 194.4           |

## 2. 가구 조사결과 요약

### 1) 가계 지출 현황

월간 지출 항목에서는 자동차 유류비,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가계지출 현황 : 월간 지출

(단위: %, 만원)

| 항목            |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br>평균 금액 |
|---------------|----|------------|-------|-------|----------------|
| 대분류           | 기준 | 소분류        | 비율    | 평균 금액 |                |
| 자동차 유류비       | 월간 | 휘발유 비용     | 41.7  | 23.8  | 9.9            |
|               | 월간 | 경유 비용      | 28.1  | 31.7  | 8.9            |
|               | 월간 | LPG 비용     | 5.3   | 25.5  | 1.4            |
|               | 월간 | CNG 비용     | 0.0   | 9.0   | 0.0            |
| 오토바이 유류비      | 월간 | 휘발유 비용     | 2.2   | 4.0   | 0.1            |
| 주거비           | 월간 | 주거비용 총금액   | 41.5  | 12.8  | 5.3            |
|               | 월간 | 전기료        | 41.0  | 4.6   | 1.9            |
|               | 월간 | 수도료        | 39.8  | 1.8   | 0.7            |
|               | 월간 | 도시가스요금     | 25.0  | 5.9   | 1.5            |
|               | 월간 | 지역난방비      | 2.0   | 6.3   | 0.1            |
|               | 월간 | 난방용 유류비    | 12.0  | 5.8   | 0.7            |
|               | 월간 | 연탄         | 1.3   | 4.5   | 0.1            |
|               | 월간 | LPG        | 14.7  | 1.9   | 0.3            |
|               | 월간 | 기타         | 3.8   | 2.6   | 0.1            |
| 주거비<br>(공동주택) | 월간 | 주거비용 총금액   | 57.7  | 19.6  | 11.2           |
|               | 월간 | 전기료        | 57.5  | 4.4   | 2.5            |
|               | 월간 | 수도료        | 57.3  | 2.1   | 1.2            |
|               | 월간 | 도시가스요금     | 55.5  | 5.5   | 3.0            |
|               | 월간 | 지역난방비      | 11.8  | 6.2   | 0.7            |
|               | 월간 | 난방용 유류비    | 0.8   | 6.4   | 0.0            |
|               | 월간 | 연탄         | 0.0   | -     | -              |
|               | 월간 | LPG        | 1.1   | 4.3   | 0.0            |
|               | 월간 | 공동부과금      | 55.6  | 6.2   | 3.4            |
| 식료품비          | 월간 | 기타         | 5.4   | 4.8   | 0.3            |
|               | 월간 | 식료품구입비     | 99.7  | 48.6  | 47.9           |
| 주류비           | 월간 | 외식비        | 85.5  | 27.6  | 23.4           |
|               | 월간 | 맥주, 소주, 양주 | 36.4  | 4.5   | 1.6            |

연간 지출 항목에서는 의류 구입비, 교육비, 보험료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38] 가계지출 현황 : 연간 지출

(단위: %, 만원)

| 항목      |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br>평균 금액 |
|---------|----|--------------|-------|---------|----------------|
| 대분류     | 기준 | 소분류          | 비율    | 평균 금액   |                |
| 자동차 보험료 | 연간 | 보유 차량 보험료    | 67.3  | 84.6    | 55.1           |
|         | 연간 | 미보유 차량 보험료   | 0.3   | 78.2    | 0.3            |
| 주택 수리비  | 연간 | 주택 수리비       | 5.0   | 524.1   | 26.1           |
| 문화생활비   | 연간 | 서적/음반 구입비    | 37.9  | 31.2    | 11.7           |
|         | 연간 | 관람료          | 51.8  | 16.2    | 8.3            |
|         | 연간 | 경륜/경정/경마     | .0    | 12.5    | 0.0            |
|         | 연간 | 복권 구입        | 13.9  | 19.0    | 2.6            |
|         | 연간 | 신문/잡지 구독     | 6.6   | 18.0    | 1.2            |
|         | 연간 | 체육활동비        | 15.5  | 114.1   | 17.5           |
|         | 연간 | 음악/문화 활동비    | 5.3   | 84.0    | 4.4            |
|         | 연간 | 반려동물 지출비     | 6.7   | 57.5    | 3.8            |
| 가전제품구입비 | 연간 | TV           | 4.4   | 142.2   | 6.1            |
|         | 연간 | 냉장고, 김치냉장고   | 6.2   | 177.1   | 10.9           |
|         | 연간 | 세탁기          | 3.1   | 102.9   | 3.1            |
|         | 연간 | 에어컨          | 3.5   | 169.3   | 5.8            |
|         | 연간 | 카메라 관련 제품    | .4    | 79.5    | 0.3            |
|         | 연간 | 기타가전제품       | 6.9   | 51.2    | 3.5            |
|         | 연간 | 가전제품 렌탈      | 10.5  | 43.7    | 4.5            |
| 통신장비구입비 | 연간 | 휴대폰          | 8.2   | 74.5    | 6.1            |
|         | 연간 | 컴퓨터          | 3.2   | 116.6   | 3.7            |
|         | 연간 | 기타 장비        | .7    | 20.7    | 0.1            |
| 가구구입비   | 연간 | 가구구입비        | 7.2   | 189.4   | 13.5           |
|         | 연간 | 가구구입·인테리어비   | 1.8   | 427.7   | 7.6            |
|         | 연간 | 악기구입비        | .8    | 58.0    | 0.5            |
|         | 연간 | 스포츠레저장비구입비   | 2.7   | 114.9   | 3.1            |
| 의류구입비   | 연간 | 의류           | 95.3  | 144.5   | 136.3          |
|         | 연간 | 잡화           | 62.9  | 56.3    | 35.0           |
|         | 연간 | 장신구          | 21.8  | 63.1    | 13.6           |
| 화장품비    | 연간 | 화장품          | 90.4  | 43.5    | 38.9           |
|         | 연간 | 이미용비         | 98.1  | 42.8    | 41.6           |
| 여행레저비   | 연간 | 여행 및 숙박료(국내) | 43.6  | 112.5   | 48.6           |
|         | 연간 | 여행 및 숙박료(국외) | 18.9  | 402.0   | 75.0           |
| 교육비     | 연간 | 공교육비(등록금 등)  | 40.2  | 463.5   | 118.8          |
|         | 연간 | 공교육비(급식비)    | 40.2  | 109.9   | 15.4           |
|         | 연간 | 기타 공교육비      | 40.2  | 71.0    | 12.6           |
|         | 연간 | 가구원 사교육비     | 40.9  | 747.8   | 209.9          |
|         | 연간 | 비가구원 공교육비    | 0.6   | 2,084.4 | 13.4           |
|         | 연간 | 비가구원 사교육비    | 0.3   | 1,136.3 | 3.5            |
| 보건의료비   | 연간 | 한약재          | 11.3  | 71.7    | 8.0            |

|          |       |             |       |          |
|----------|-------|-------------|-------|----------|
| 연간       | 성형수술비 | 0.9         | 236.6 | 2.0      |
| 연간       | 치과진료비 | 29.5        | 136.2 | 39.8     |
| 연간       | 입원치료비 | 15.9        | 270.0 | 42.4     |
| 연간       | 외래진료비 | 92.4        | 31.7  | 29.0     |
| 연간       | 약제비   | 93.5        | 27.7  | 25.6     |
| 혼인장례이사비  | 연간    | 혼인비용        | 1.8   | 1695.4   |
|          | 연간    | 혼인 가구구입비    | 1.0   | 902.5    |
|          | 연간    | 혼인 가전제품 구입비 | 1.0   | 935.7    |
|          | 연간    | 혼인 주택구입비    | 0.3   | 10,442.9 |
|          | 연간    | 혼인 전세금(보증금) | 0.5   | 8,860.9  |
|          | 연간    | 장례비용        | 1.2   | 1,341.6  |
|          | 연간    | 이사비용        | 7.3   | 180.1    |
| 기부금      | 연간    | 기부금         | 37.1  | 177.3    |
| 가사도우미서비스 | 연간    | 가사도우미서비스비   | 0.9   | 543.2    |
|          |       |             |       | 4.6      |

## 2)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

타가구로 이전 지출이 있는 가구가 21.4%였고, 반대로 타가구로부터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는 21.7%로 조사되었다. 경조사 지출의 경우 해당가구 평균 금액은 94.1만원, 경조사 소득의 해당가구 평균 금액은 1,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9]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

(단위: %, 만원)

| 항목      |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br>평균 금액 |
|---------|----|----------|-------|---------|----------------|
| 대분류     | 기준 | 소분류      | 비율    | 평균 금액   |                |
| 이전소득 지출 | 연간 | 타가구 이전지출 | 21.4  | 473.3   | 100.4          |
|         | 연간 | 타가구 이전소득 | 21.7  | 546.2   | 117.4          |
| 경조사     | 연간 | 경조사 지출   | 87.6  | 94.1    | 81.5           |
|         | 연간 | 경조사 소득   | 4.4   | 1,444.0 | 62.1           |

## 3) 상속, 증여

타가구로부터 상속받은 적이 있는 가구는 0.4%, 가구원이 상속을 해준 적이 있는 가구는 0.1%로 나타났다. 증여의 경우 가구원이 증여한 가구는 0.5%, 타가구로부터 증여받은 가구는 0.4%로 상속, 증여 모두 해당 가구 수는 매우 적었다.

[표 40] 상속 및 증여

(단위: %, 만원)

| 항목  |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br>평균 금액 |
|-----|----|----------------|-------|----------|----------------|
| 대분류 | 기준 | 소분류            | 비율    | 평균 금액    |                |
| 상속  | 연간 | 타가구로부터 상속받은 금액 | 0.4   | 17,714.3 | 76.9           |
|     | 연간 | 가구원이 상속해준 금액   | 0.1   | 17,833.3 | 11.1           |
| 증여  | 연간 | 가구원이 증여한 금액    | 0.5   | 15,291.7 | 75.8           |
|     | 연간 | 타가구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 0.4   | 11,250.0 | 46.5           |

## 4) 정부 지원 현금 · 현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3.3%였으며, 연간 평균 수령액은 476.1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지원금 중에서는 0-5세 지원금이 평균 31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41] 정부 지원 현금 수급

(단위: %, 만원)

| 항목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br>평균 금액 |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연간    | 3.3   | 476.1 | 15.6           |
| 자녀양육<br>지원금 | 출산    | 1.4   | 66.0  | 0.9            |
|             | 0-5세  | 9.2   | 311.0 | 28.2           |
|             | 6세 이상 | 2.2   | 242.8 | 5.1            |
| 기타현물지원      | 연간    | 0.8   | 85.7  | 0.7            |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1.6%였으며 월평균 본인 부담액은 36.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

(단위: %, 만원)

| 항목             |      | 수급가구 | 본인부담액<br>(해당 가구) | 특별현금급여<br>(해당가구) |
|----------------|------|------|------------------|------------------|
| 노인 장기<br>요양서비스 | 가구원  | 1.6  | 36.3             | 0.0              |
|                | 비가구원 | 0.4  | 77.9             | 0.0              |

## 5) 근로장려금, 유가보조금 및 기타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은 가구의 비율은 2.3%, 평균 금액은 64.2만원이었으며, 유가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1.9%로 수령 가구의 평균 금액은 약 328.2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3] 근로장려금, 유가보조금 및 기타 환급금

(단위: %, 만원)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근로장려금     | 1.8   | 82.7  | 1.5         |
| 유가보조금     | 1.9   | 328.2 | 6.0         |
| 연말정산 환급금  | 24.8  | 74.4  | 17.8        |
| 종합소득세 환급금 | 2.3   | 64.2  | 1.4         |

## 6) 출산

출산 관련 의료기관 지출비가 발생한 가구는 1.4%로 평균 134.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 조리원 이용비는 202.0만원, 산후 도우미 이용비는 99.5만원 가량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출산 관련 지출비

(단위: %, 만원)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의료기관 지출비       | 1.4   | 134.0 | 1.9         |
|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출비 | 0.0   | -     | 0.0         |
| 산후조리원 이용비      | 0.9   | 202.0 | 1.8         |
| 산후도우미 이용비      | 0.3   | 99.5  | 0.3         |

## 제 6 장 가구원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

### 1. 가구원 조사결과 요약

#### 1) 경제활동 상태 (2017년 5월 1일 기준)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 중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비율은 78.4%로 나타났고, 그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69.9%,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30.1%로 나타났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정부지원금 등이 있을 경우 가구원 조사표의 조사대상이 되므로 소득활동이 없는 가구원이 조사된 경우는 21.6%로 나타났다.

[표 45] 소득활동 현황

(단위: %)

| 소득 활동합 |        | 소득활동 하지 않음 |      |
|--------|--------|------------|------|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구직         | 비구직  |
| 69.9   | 30.1   | 7.1        | 92.9 |

[표 46] 경제활동 상태

(단위: %)

| 구분                 | 세부항목         | 비율   |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근로자      | 52.3 |
|                    | 임시직 근로자      | 10.1 |
|                    | 일용직 근로자      | 7.5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22.2 |
|                    | 고용원을 둔 사업주   | 3.9  |
|                    | 무급 가족 종사자    | 4.1  |
| 근무시간 형태<br>(임금근로자) | 전일제          | 90.4 |
|                    | 시간제          | 9.6  |

## 2) 연간 소득

가구원 개인 연간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조사 가구원의 평균 연간소득은 2,934.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종류별로는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이 3,289.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가구원 연간 소득

(단위: %, 만원)

| 항목                     | 소득 가구원       |         | 조사 가구원<br>평균 금액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근로소득                   | 58.3         | 3,289.7 | 1,915.5         |
| 사업소득                   | 21.2         | 2,866.6 | 607.2           |
| 부동산<br>임대소득            | 토지           | 0.5     | 756.1           |
|                        | 주택           | 4.2     | 1,201.3         |
|                        | 상가 및 사무실     | 1.9     | 2,159.4         |
|                        | 기타           | 0.0     | 2,035.0         |
| 이자 및 배당소득              | 2.7          | 351.9   | 9.4             |
| 기타소득                   | 타가구 이전소득     | 12.0    | 505.5           |
|                        | 노인요양특별급여     | 0.0     | 780.0           |
|                        | 그 외 기타소득     | 2.8     | 1,377.5         |
| 양도소득<br>/손실            | 양도소득         | 0.1     | 1,782.4         |
|                        | 양도손실         | 0.1     | 1,262.5         |
| 보험급여<br>/정부지원<br>/퇴직급여 | 사회보험 급여      | 12.4    | 523.7           |
|                        | 민간보험 급여      | 4.7     | 379.4           |
|                        | 정부지원 현금소득    | 19.6    | 281.3           |
|                        | 특수직 퇴직연금     | 1.6     | 2,816.0         |
|                        | 특수직 퇴직일시금    | 0.1     | 5,200.0         |
|                        | 개인형 퇴직연금     | 0.0     | 1,200.0         |
|                        |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 0.5     | 3,691.7         |
| 연간 총소득*                |              |         | 2,934.0         |

\* 연간 총소득은 양도 손실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

## 3) 연금/보험 납부 금액

소득 가구원 중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36.5%로 가장 많았고, 연간 평균 금액은 11.3만

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는 44.0%, 지역 가입자는 17.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고용 보험료는 가구원 중 36.2%가 납부하였다. 민간보험에서는 보장보험 가입자가 7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8] 공적연금·민간보험 납부 현황

(단위: %, 만원)

| 구분      | 세부항목        | 납부 가구원 |       | 조사 가구원<br>평균 금액 |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국민연금    | 사업장 가입자     | 36.5   | 11.3  | 4.1             |
|         | 지역 가입자      | 10.6   | 16.7  | 1.8             |
|         |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 1.0    | 14.2  | 0.1             |
| 특수직역 연금 |             | 4.7    | 31.6  | 1.4             |
| 건강보험료   | 사업장 가입자     | 44.0   | 127.8 | 56.0            |
|         | 지역 가입자      | 17.5   | 158.8 | 27.7            |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       | 36.2   | 22.6  | 8.1             |
| 민간보험    | 퇴직연금        | 0.7    | 373.2 | 2.4             |
|         | 연금저축        | 5.5    | 325.9 | 18.0            |
|         | 연금보험        | 6.2    | 341.1 | 21.0            |
|         | 보장보험        | 70.2   | 214.6 | 150.6           |
|         | 저축보험        | 2.3    | 367.6 | 8.4             |
|         | 자동차보험       | 42.2   | 76.9  | 32.4            |

####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신용카드를 보유한 가구원의 비율은 63.7%이고 보유 가구원의 국내 평균 사용금액은 1,180.8만원으로 나타났다. 직불카드를 보유한 가구원의 비율은 32.7%, 국내 평균 사용 금액은 497.2만원이었다. 연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103.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현황

(단위: %)

| 구분   | 세부항목     | 보유 가구원 |         | 조사 가구원<br>평균 금액 |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신용카드 | 국내사용액    | 63.7   | 1,180.8 | 751.9           |
|      | 해외사용액    |        | 6.8     | 4.3             |
|      | 전통시장 사용액 |        | 15.2    | 9.6             |
|      | 대중교통 사용액 |        | 23.5    | 15.0            |

|       |          |      |       |       |
|-------|----------|------|-------|-------|
| 직불카드  | 국내사용액    | 32.7 | 497.2 | 161.9 |
|       | 해외사용액    |      | 0.8   | 0.3   |
|       | 전통시장 사용액 |      | 9.1   | 3.0   |
|       | 대중교통 사용액 |      | 8.1   | 2.6   |
| 현금영수증 | 사용액      | -    | 103.0 | 103.0 |

## 5) 소득 공제 현황

### (1) 소득세 납부 유형

소득 가구원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의 비율은 40.3%였고, 종합소득 신고를 한 가구원의 비율은 11.5%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가구원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았다.

[표 50] 소득세 납부 유형

(단위: %)

| 구분        |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한 응답자 | 종합소득세 신고만 한 응답자 |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동시 신고 | 해당 없음 |
|-----------|------------------|-----------------|-------------------------|-------|
| 응답자 비율(%) | 40.3             | 11.5            | 0.4                     | 47.8  |

###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의 공제내역과 결정세액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 중 공적연금 보험료를 공제 받은 가구원의 비율이 83.5%였고, 평균 금액은 170.8만원이었다. 보험료 공제를 받은 비율은 78.3%였고, 평균 금액은 162.1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받은 비율은 54.6%였으며, 평균 금액은 242.5만원이었다.

[표 51]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단위: %, 만원)

| 구분  | 세부항목     | 공제 가구원 |       | 연말정산 가구원 평균 금액 |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보험료 | 공적연금 보험료 | 83.5   | 170.8 | 57.5           |
|     | 보험료      | 78.3   | 162.1 | 51.0           |
|     | 보장성 보험료  | 61.3   | 14.2  | 3.5            |
| 의료비 | 의료비      | 17.5   | 35.1  | 2.5            |

|             |             |       |       |      |
|-------------|-------------|-------|-------|------|
| 교육비         | 교육비         | 17.2  | 52.7  | 3.5  |
| 주택자금        | 주택자금        | 9.3   | 221.1 | 8.3  |
|             | 주택마련저축      | 3.5   | 50.4  | 0.7  |
|             | 월세          | 1.2   | 26.4  | 0.1  |
| 기부금         | 기부금 소득공제    | 1.5   | 66.4  | 0.4  |
|             | 기부금 세액공제    | 24.0  | 18.5  | 1.8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1.6   | 50.7  | 0.3  |
| 연금계좌        | 과학기술인공제     | 0.0   | 0.0   | 0.0  |
|             | 퇴직연금        | 1.3   | 38.8  | 0.2  |
|             | 연금저축        | 11.5  | 35.4  | 1.6  |
| 투자조합출자 등    | 투자조합출자 등    | 0.0   | 0.0   | 0.0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54.6  | 242.5 | 52.6 |
| 우리사주조합출자    | 우리사주조합출자    | 0.0   | 0.0   | 0.0  |
| 기타          | 기타 소득공제     | 1.2   | 97.2  | 0.5  |
|             | 기타 세액공제     | 0.1   | 14.9  | 0.0  |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100.0 | 150.2 | 53.2 |

\* 해당자 비율과 전체 평균금액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응답한 가구원(n=3,196)을 기준으로 산출. 공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결정세액 계산에서는 세금이 0원인 케이스를 포함시켜 계산함.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 중 환급을 받은 가구원의 비율은 22.2%였고, 추가 납부를 한 가구원의 비율은 5.6%였다.

[표 52]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

(단위: %, 만원)

| 구분        | 해당 가구원 |       | 연말정산 가구원<br>평균 금액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환급 받은 금액  | 22.2   | 74.3  | 16.4              |
| 추가 납부한 금액 | 5.6    | 91.5  | 5.1               |

### (3) 종합소득공제현황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가구원 중 36.6%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공제 받았고 평균 금액은 162.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준공제를 받은 가구원의 비율은 64.3%였고, 평균 금액은 7.2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3] 종합소득신고 공제 현황

(단위: %, 만원)

| 구분               | 세부항목       | 공제 가구원 |       | 종합소득 신고<br>가구원<br>평균 금액 |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보험료              | 공적연금 보험료   | 36.6   | 162.5 | 6.8                     |
| 기부금              | 기부금 소득공제   | 1.5    | 151.5 | 0.2                     |
|                  | 기부금 세액공제   | 3.1    | 18.3  | 0.1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0.2    | 60.8  | 0.0                     |
| 연금계좌             | 과학기술인공제    | 0.0    | 0.0   | 0.0                     |
|                  | 퇴직연금       | 0.0    | 0.0   | 0.0                     |
|                  | 연금저축       | 2.7    | 32.1  | 0.1                     |
| 투자조합출자 등         | 투자조합출자 등   | 0.0    | 0.0   | 0.0                     |
| 표준공제             | 표준공제       | 64.3   | 7.2   | 0.6                     |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 0.0    | 0.0   | 0.0                     |
| 기타               | 기타 소득공제    | 6.3    | 228.9 | 1.7                     |
|                  | 기타 세액공제    | 13.9   | 13.3  | 0.2                     |
| 성실사업자대상<br>공제 항목 | 의료비        | 0.3    | 0.0   | 0.0                     |
|                  | 교육비        | 0.3    | 0.0   | 0.0                     |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100.0  | 124.7 | 11.8                    |

\* 해당자 비율과 전체 평균금액은 2016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하였다고 응답한 가구원(n=937)을 기준으로 산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환급 받은 가구원의 비율은 2.3%였고 평균 금액은 59.0만원으로 나타났고, 추가 납부한 가구원의 비율은 2.9%로 조사되었고, 평균 금액은 178.1만원이었다.

[표 54]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

(단위: %, 만원)

| 구분        | 해당 가구원 |       |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br>평균 금액 |
|-----------|--------|-------|----------------------|
|           | 비율     | 평균 금액 |                      |
| 환급 받은 금액  | 2.3    | 59.0  | 1.3                  |
| 추가 납부한 금액 | 2.9    | 178.1 | 5.1                  |

## 2. 가구원 의식조사 결과 요약

### 1) 사회·정치에 대한 인식

#### (1) 다양한 유형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

가족과 친구는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난 반면,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의 경우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55] 타인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구 분                  | 항목           | 비 율  |
|----------------------|--------------|------|
| 정치인(국회의원 등)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0.2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6.1  |
|                      | 보통이다         | 27.7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50.0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16.0 |
| 법조인<br>(판사, 검사 등 포함)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2.0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14.7 |
|                      | 보통이다         | 38.6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35.4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9.2  |
| 공무원<br>(판사, 검사 등 제외)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3.5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27.1 |
|                      | 보통이다         | 43.6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21.1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4.8  |
| 교수 등 전문가 집단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4.4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26.5 |
|                      | 보통이다         | 45.5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18.9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4.7  |

|                            |              |      |
|----------------------------|--------------|------|
| 언론인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2.3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18.7 |
|                            | 보통이다         | 43.2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28.9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7.0  |
| 기업인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2.8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19.0 |
|                            | 보통이다         | 41.2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30.2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6.8  |
| 가족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73.8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23.1 |
|                            | 보통이다         | 2.4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0.6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0.1  |
| 친구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30.2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58.2 |
|                            | 보통이다         | 10.3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1.1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0.2  |
|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br>(가족, 친구 제외)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3.7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42.4 |
|                            | 보통이다         | 43.8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9.1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1.1  |
| 처음 만난 사람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0.4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6.5  |
|                            | 보통이다         | 44.2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34.2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14.8 |

## (2)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투표는 참여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9.6%로 나와 정치적인 관심도는 보통일지라도 투표에는 적극적인 참여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 정치에 대한 관심도

(단위: %)

| 구 분       | 항목               | 비 율  |
|-----------|------------------|------|
| 정치적 성향    | 매우 진보적이다         | 2.7  |
|           | 다소 진보적이다         | 28.2 |
|           | 중도적이다            | 36.5 |
|           | 다소 보수적이다         | 26.0 |
|           | 매우 보수적이다         | 6.6  |
| 정치에 대한 관심 | 매우 많다            | 5.9  |
|           | 다소 많다            | 29.4 |
|           | 보통이다             | 41.6 |
|           | 다소 적다            | 16.0 |
|           | 매우 적다            | 7.1  |
| 투표 참여 정도  | 적극 참여한다          | 47.1 |
|           |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42.5 |
|           | 잘 참여하지 않는다       | 9.2  |
|           |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1.2  |
|           | 투표권이 없다(만18세 이하) | 0.1  |

## 2) 조세·복지제도

### (1) 본인 세부담 평가

본인의 세금 부담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절하게 납부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 나왔으며, 세금 대비 정부의 혜택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조사되었다. 정부의 혜택이 낮은 수준(약간 낮은 수준 +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40.9%로 그 뒤를 이어 높게 조사되었다.

[표 57] 본인 세부담 평가

(단위: %)

| 구 분                      | 항 목        | 비 율  |
|--------------------------|------------|------|
| 본인 경제적 능력<br>대비 세부담 평가   | 매우 많이 납부한다 | 4.4  |
|                          | 약간 많이 납부한다 | 32.9 |
|                          | 적절하게 납부한다  | 56.3 |
|                          | 약간 적게 납부한다 | 4.9  |
|                          | 매우 적게 납부한다 | 1.4  |
| 본인 납부 세금 대비<br>정부 혜택 평가  | 매우 높은 수준   | 0.5  |
|                          | 약간 높은 수준   | 11.2 |
|                          | 적당한 수준     | 47.3 |
|                          | 약간 낮은 수준   | 32.7 |
|                          | 매우 낮은 수준   | 8.2  |
| 소득 유사 그룹 대비<br>본인 세부담 평가 | 매우 높은 수준   | 2.8  |
|                          | 약간 높은 수준   | 30.6 |
|                          | 적당한 수준     | 60.3 |
|                          | 약간 낮은 수준   | 5.1  |
|                          | 매우 낮은 수준   | 1.1  |

## (2) 근로소득세 부담 평가

연간 급여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평가에서는 저소득층, 중소득층은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반면, 3억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근로소득세 부담 평가

(단위: %)

| 근로소득자<br>급여소득 | 근로소득세 액 | 항목    | 비율   |
|---------------|---------|-------|------|
| 1,500만원       | 2만원     | 매우 높다 | 1.0  |
|               |         | 약간 높다 | 7.3  |
|               |         | 적절하다  | 48.6 |
|               |         | 약간 낮다 | 31.1 |
|               |         | 매우 낮다 | 12.0 |
| 3,500만원       | 40만원    | 매우 높다 | 1.5  |
|               |         | 약간 높다 | 12.6 |
|               |         | 적절하다  | 58.6 |
|               |         | 약간 낮다 | 21.4 |
|               |         | 매우 낮다 | 5.9  |
| 5,500만원       | 200만원   | 매우 높다 | 3.3  |
|               |         | 약간 높다 | 22.7 |
|               |         | 적절하다  | 58.1 |
|               |         | 약간 낮다 | 14.8 |
|               |         | 매우 낮다 | 1.0  |
| 7,000만원       | 400만원   | 매우 높다 | 4.6  |
|               |         | 약간 높다 | 28.0 |
|               |         | 적절하다  | 55.3 |
|               |         | 약간 낮다 | 11.4 |
|               |         | 매우 낮다 | 0.7  |
| 9,000만원       | 700만원   | 매우 높다 | 7.1  |
|               |         | 약간 높다 | 32.8 |
|               |         | 적절하다  | 47.8 |
|               |         | 약간 낮다 | 11.1 |
|               |         | 매우 낮다 | 1.2  |
| 1억 3,000만원    | 1,600만원 | 매우 높다 | 12.0 |
|               |         | 약간 높다 | 33.6 |
|               |         | 적절하다  | 38.3 |
|               |         | 약간 낮다 | 12.8 |
|               |         | 매우 낮다 | 3.3  |

| 근로소득자<br>급여소득 | 근로소득세액 | 항목    | 비율   |
|---------------|--------|-------|------|
| 3억 7,000만원    | 1억 원   | 매우 높다 | 22.7 |
|               |        | 약간 높다 | 36.4 |
|               |        | 적절하다  | 21.7 |
|               |        | 약간 낮다 | 14.9 |
|               |        | 매우 낮다 | 4.3  |
| 18억 원         | 6억 원   | 매우 높다 | 28.5 |
|               |        | 약간 높다 | 30.6 |
|               |        | 적절하다  | 19.3 |
|               |        | 약간 낮다 | 15.3 |
|               |        | 매우 낮다 | 6.2  |

### (3) 소득 격차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크다고 응답한 사람이 89%(매우 크다+약간 크다)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역시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7.7%로 소득 격차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1%(매우 중요+대체로 중요)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소득격차

(단위: %)

| 구 분                | 항목       | 비율   |
|--------------------|----------|------|
| 우리나라<br>계층 간 소득 격차 | 매우 크다    | 36.7 |
|                    | 약간 크다    | 52.3 |
|                    | 보통이다     | 10.4 |
|                    | 별로 크지 않다 | 0.5  |
|                    | 전혀 크지 않다 | 0.0  |

|                        |                          |        |
|------------------------|--------------------------|--------|
| 향후 우리나라<br>계층 간 소득 격차  | 매우 커질 것이다                | 36.0   |
|                        | 약간 커질 것이다                | 51.7   |
|                        | 보통이다                     | 11.1   |
|                        | 약간 작아질 것이다               | 1.2    |
|                        | 매우 작아질 것이다               | 0.0    |
| 소득 격차 줄이기<br>위해 중요한 요소 | 정부 정책<br>↑<br>↓<br>개인 노력 | ① 28.7 |
|                        |                          | ② 40.4 |
|                        |                          | ③ 22.1 |
|                        |                          | ④ 7.7  |
|                        |                          | ⑤ 1.1  |

## (4)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복지 축소 시 노인층 소득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축소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응답한 반면, 확대 시에는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60]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1)

(단위: %)

| 구 분                                    | 항목                 | 비율   |
|--|--------------------|------|
| 현재 복지수준<br>적정성 평가                      |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 7.8  |
|  | 적당하다               | 62.8 |
|  |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9.3 |
| 복지 축소 시<br>우선적 축소 부문<br>(1순위<br>응답 기준) | 저소득층 소득지원          | 20.0 |
|  | 노인층 소득지원           | 38.9 |
|  | 장애인 지원             | 4.0  |
|  | 보건                 | 6.7  |
|  | 가족·아동              | 11.2 |
|  | 일자리                | 8.8  |
|  | 실업                 | 4.8  |
|  | 주거                 | 5.0  |
|  | 기타                 | 0.5  |

|  |           |      |
|--|-----------|------|
| 복지 확대 시<br>우선적 확대 부문<br>(1순위<br>응답 기준) | 저소득층 소득지원 | 29.1 |
|  | 노인층 소득지원  | 24.3 |
|  | 장애인 지원    | 5.8  |
|  | 보건        | 5.9  |
|  | 가족·아동     | 11.0 |
|  | 일자리       | 16.1 |
|  | 실업        | 3.2  |
|  | 주거        | 4.6  |
|  | 기타        | 0.1  |

복지 확대 시 재원 조달 방안에서는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주요세목 세율조정을 통해 증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증세 시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대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세금 추가 부담에 있어서는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60.7%로 조사되었다.

바람직한 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되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52.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61]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2)

(단위: %)

| 구 분                                   | 항목                               | %    |
|---------------------------------------|----------------------------------|------|
| 복지 확대 시<br>재원 조달 방안<br>(1순위<br>응답 기준) |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주요세목 세율조정을 통한 증세 | 49.4 |
|                                       |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운영                   | 14.0 |
|                                       | 다른 부문 재정지출 축소 추진                 | 15.2 |
|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 14.8 |
|                                       | 국가부채 통한 충당                       | 2.0  |
|                                       | 모르겠다                             | 4.3  |
|                                       | 기타                               | 0.3  |
| 증세 시<br>바람직한 방법<br>(1순위<br>응답 기준)     | 대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 64.6 |
|                                       | 모든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 6.1  |
|                                       |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         | 27.2 |
|                                       | 중소득층 이상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      | 1.1  |
|                                       | 모든 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      | 0.8  |
|                                       |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 0.1  |
|                                       | 기타                               | 0.1  |

|                            |                                    |      |
|----------------------------|------------------------------------|------|
| 증세 불가피 시<br>세금 추가 부담<br>의향 | 추가 부담할 의향이 없음                      | 60.7 |
|                            | 현재 세금의 5% 미만 추가 부담 의향              | 33.1 |
|                            | 현재 세금의 5~10% 미만 추가 부담 의향           | 5.3  |
|                            | 현재 세금의 10~15% 미만 추가 부담 의향          | 0.6  |
|                            | 현재 세금의 15% 이상 추가 부담 의향             | 0.2  |
| 바람직한<br>복지 정책 방향           |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              | 20.8 |
|                            |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되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 제공 | 52.7 |
|                            |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제공                | 26.5 |

### (5) 세 부담과 복지 수준 비교 평가

세 부담과 복지 수준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중부담-중복지 가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2] 세 부담과 복지 수준 비교 평가

(단위: %)

| 구분        | 현재 우리나라의<br>평균적인 수준 | 바람직한 수준 |
|-----------|---------------------|---------|
| 저부담 - 고복지 | 3.0                 | 9.7     |
| 중부담 - 고복지 | 8.0                 | 29.4    |
| 고부담 - 고복지 | 0.8                 | 5.0     |
| 저부담 - 중복지 | 13.8                | 12.1    |
| 중부담 - 중복지 | 32.5                | 39.0    |
| 고부담 - 중복지 | 6.7                 | 1.5     |
| 저부담 - 저복지 | 8.5                 | 1.5     |
| 중부담 - 저복지 | 21.4                | 1.6     |
| 고부담 - 저복지 | 5.3                 | 0.2     |

### 3) 납세 관련 태도

#### (1) 세금 납부에 영향을 주는 항목

'나 자신의 정직성 및 성실성'이 세금 납부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세청에 타인이 나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세무조사에 대한

'가능성'은 비교적 영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 세금 납부에 영향을 주는 항목

(단위: %)

| 구 분                           | 항목             | 비율   |
|-------------------------------|----------------|------|
| 나 자신의 정직성 및 성실성               | 매우 영향을 준다      | 22.2 |
|                               | 대체로 영향을 준다     | 40.0 |
|                               | 보통이다           | 26.2 |
|                               |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9.9  |
|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7  |
| 친구 또는 동료가 정직하게 세금 납부할 것이라는 믿음 | 매우 영향을 준다      | 15.0 |
|                               | 대체로 영향을 준다     | 37.7 |
|                               | 보통이다           | 34.6 |
|                               |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0.4 |
|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2  |
| 일반 사람들이 정직하게 세금 납부할 것이라는 믿음   | 매우 영향을 준다      | 14.5 |
|                               | 대체로 영향을 준다     | 36.1 |
|                               | 보통이다           | 35.8 |
|                               |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1.6 |
|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9  |
| 세무조사에 대한 가능성                  | 매우 영향을 준다      | 12.2 |
|                               | 대체로 영향을 준다     | 30.6 |
|                               | 보통이다           | 36.7 |
|                               |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5.2 |
|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5.2  |
| 국세청에 타인이 나의 소득 정보 제공할 수 있다는 점 | 매우 영향을 준다      | 9.2  |
|                               | 대체로 영향을 준다     | 32.6 |
|                               | 보통이다           | 41.7 |
|                               |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3.6 |
|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9  |
| 공공재화 서비스의 혜택 받고 있다는 점         | 매우 영향을 준다      | 13.8 |
|                               | 대체로 영향을 준다     | 37.4 |
|                               | 보통이다           | 37.5 |
|                               |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9.4  |
|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8  |

|                                    |                |      |
|------------------------------------|----------------|------|
| 정부가 세금을<br>효율적이고 부과 없이<br>집행한다는 신뢰 | 매우 영향을 준다      | 18.8 |
|                                    | 대체로 영향을 준다     | 33.4 |
|                                    | 보통이다           | 35.7 |
|                                    | 대체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9.6  |
|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6  |

## (2) 조건에 따른 현금 결제 의향

10% 할인할 경우 현금 결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70~80%의 응답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50만원 결제 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79.2%로 가장 높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카드 사용금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변함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8.1%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4] 조건에 따른 현금 결제 의향

(단위: %)

| 구 분                                   | 항 목         | 비 율  |
|---------------------------------------|-------------|------|
| 50만원 10% 할인 시,<br>현금 결제 여부            |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 79.2 |
|                                       |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 | 20.8 |
| 10만원 10% 할인 시,<br>현금 결제 여부            |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 70.8 |
|                                       |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 | 29.2 |
| 100만원 10% 할인 시,<br>현금 결제 여부           |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 72.3 |
|                                       |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 | 27.7 |
| 소득공제 축소·폐지 시,<br>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미치는<br>영향 | 늘어날 것이다     | 2.5  |
|                                       | 변함없을 것이다    | 69.4 |
|                                       | 줄어들 것이다     | 28.1 |

### (3) 납세 관련 인지도

납세 관련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74.9%로 부가가치세 세율에 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밖에 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의료비 공제 관련, 우리나라 소득세 비율에 관련하여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나타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납세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5] 납세 관련 인지도

(단위: %)

| 구 분                           | 항 목  | 비 율  |
|-------------------------------|------|------|
| 부가가치세 세율 10%                  | 예    | 74.9 |
|                               | 아니오  | 5.8  |
|                               | 모르겠다 | 19.3 |
| 소득세 최고세율 35% 이상               | 예    | 32.2 |
|                               | 아니오  | 17.2 |
|                               | 모르겠다 | 50.6 |
| 법인세 최고세율 20% 이하               | 예    | 23.6 |
|                               | 아니오  | 17.8 |
|                               | 모르겠다 | 58.6 |
| 의료비 지출 세액공제로 전환 경우, 고소득자가 유리  | 예    | 26.6 |
|                               | 아니오  | 16.9 |
|                               | 모르겠다 | 56.5 |
|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율 OECD 평균수준 이상 | 예    | 19.6 |
|                               | 아니오  | 22.6 |
|                               | 모르겠다 | 57.8 |

### (4) 현금소득 국세청 신고 비중

증빙서류가 없는 현금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서 전액 모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게 나왔고, 현금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1%로 나타났다.

[표 66] 현금소득 국세청 신고 비중

(단위: %)

| 구 분                                      | 항목                     | 비율   |
|--|------------------------|------|
| 증빙서류 없는<br>현금 소득 중<br>국세청에 신고해야<br>하는 비중 | 현금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22.1 |
|  | 현금소득의 10%(200만원) 정도    | 6.8  |
|  | 현금소득의 20%(400만원) 정도    | 7.2  |
|  | 현금소득의 30%(600만원) 정도    | 5.4  |
|  | 현금소득의 40%(800만원) 정도    | 5.0  |
|  | 현금소득의 50%(1,000만원) 정도  | 10.6 |
|  | 현금소득의 60%(1,200만원) 정도  | 2.8  |
|  | 현금소득의 70%(1,400만원) 정도  | 3.0  |
|  | 현금소득의 80%(1,600만원) 정도  | 2.4  |
|  | 현금소득의 90%(1,800만원) 정도  | 2.6  |
| 현금소득 2000만원 전액                           |                        | 32.2 |

#### 4) 조세·세무행정 평가

우리나라 조세·세무 행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49.6%), 조세제도 시스템이 고소득층에 유리하다(61.3%),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51.1%), 털세자에 대한 처벌이 낮은 편이다(72.7%)라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혈행 조세제도 시스템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가 복잡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8%로 사람들이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세금 관련 정보 제공이 신고·납부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4.6%로 세금 관련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표 67] 조세·세무행정 평가

(단위: %)

| 구 분                            | 항목                     | 비 율  |
|--------------------------------|------------------------|------|
| 정부 관료가<br>국민과 국가경제<br>발전 위해 노력 | 매우 그렇다                 | 0.9  |
|                                | 대체로 그렇다                | 33.0 |
|                                | 보통이다                   | 28.5 |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30.7 |
|                                | 매우 그렇지 않다              | 6.9  |
| 과세관청이<br>납세자의 불편 해소<br>위해 노력   | 매우 그렇다                 | 1.2  |
|                                | 대체로 그렇다                | 32.0 |
|                                | 보통이다                   | 33.9 |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27.7 |
|                                | 매우 그렇지 않다              | 5.2  |
| 정부가 세금을<br>공정하게 사용             | 매우 그렇다                 | 0.4  |
|                                | 대체로 그렇다                | 16.3 |
|                                | 보통이다                   | 33.8 |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37.9 |
|                                | 매우 그렇지 않다              | 11.7 |
| 조세제도 시스템                       | 소득 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이다 | 2.6  |
|                                |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 61.3 |
|                                | 중산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 10.0 |
|                                |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 8.4  |
|                                | 잘 모르겠다                 | 17.7 |
| 조세부담 공평 분배                     | 매우 그렇다                 | 0.6  |
|                                | 대체로 그렇다                | 17.1 |
|                                | 보통이다                   | 31.2 |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41.5 |
|                                | 매우 그렇지 않다              | 9.6  |
| 탈세자에 대한 처벌                     | 매우 높은 편이다              | 0.6  |
|                                | 대체로 높은 편이다             | 10.5 |
|                                | 보통이다                   | 16.1 |
|                                | 대체로 낮은 편이다             | 40.2 |
|                                | 매우 낮은 편이다              | 32.5 |

| 구 분            | 항목            | 비율   |
|----------------|---------------|------|
|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  | 매우 복잡한 편이다    | 5.7  |
|                | 대체로 복잡한 편이다   | 43.1 |
|                | 보통이다          | 32.9 |
|                | 대체로 간편한 편이다   | 16.1 |
|                | 매우 간편한 편이다    | 2.2  |
| 세금 관련 정보 도움 정도 | 매우 도움이 된다     | 3.6  |
|                | 대체로 도움이 된다    | 41.0 |
|                | 보통이다          | 43.5 |
|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0.4 |
|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5  |

## 5) 위험회피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지 묻는 질문에서 1억원을 모두 예금상품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고, 5천만원씩 예금상품과 펀드상품에 나눠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6.4%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8] 위험회피

(단위: %)

| A. 예금상품 | B. 펀드상품 | 비율   |
|---------|---------|------|
| 0원      | 1억 원    | 3.5  |
| 1천만 원   | 9천만 원   | 2.3  |
| 2천만 원   | 8천만 원   | 4.2  |
| 3천만 원   | 7천만 원   | 6.4  |
| 4천만 원   | 6천만 원   | 6.7  |
| 5천만 원   | 5천만 원   | 16.4 |
| 6천만 원   | 4천만 원   | 6.6  |
| 7천만 원   | 3천만 원   | 7.5  |
| 8천만 원   | 2천만 원   | 6.9  |
| 9천만 원   | 1천만 원   | 4.2  |
| 1억 원    | 0원      | 35.2 |

## 6) 건강 · 은퇴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건강한 편(매우 건강+대체로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6.5%로 조사되었으며, 건강하지 못한 편(매우 안 건강+대체로 안 건강)이라는 응답은 13.7%로 나타났다. 10차년도 조사에서 측정한 가구원들의 기대수명은 최소 50세에서 최대 150세로 평균 85.5세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에 관해 가구원들에게 현재 은퇴한 상태인지, 은퇴하지 않았다면 언제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은퇴하지 않은 상태라는 가구원이 전체의 82.2%였으며, 예상 은퇴 연령은 66.1세라고 응답하였다.

노후생활비에 대해 가구원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조사하는 문항은 9차년도부터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이 항목에서 정의한 생활비란 본인과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의미하며, 만약 배우자가 없는 가구원이라면 개인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평균 194.2만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적정 노후생활비는 278.3만 원이라고 응답하여 두 생활비 항목간 금액의 차이가 평균 약84만원 가량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9]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 구 분      | 항목              | 비율   |
|----------|-----------------|------|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이다      | 12.6 |
|          |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 53.9 |
|          | 보통이다            | 19.8 |
|          | 대체로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11.1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2.6  |

[표 70] 기대수명

(단위: 세)

| 구 분  | 기대수명    |
|------|---------|
| 기대수명 | 최소 기대수명 |
|      | 최대 기대수명 |
|      | 평균      |

[표 71] 은퇴

(단위: %, 세)

| 구 분 |              | %       |
|-----|--------------|---------|
| 은퇴  | 은퇴하지 않은 상태이다 | 82.2    |
|     | (은퇴 예상 시점)   | (66.1세) |
|     | 현재 은퇴 한 상태이다 | 17.9    |

[표 72] 노후생활비

(단위: 만원)

| 구 분    | 항목       | 평균 금액   |
|--------|----------|---------|
| 노후 생활비 | 최소 노후생활비 | 194.2만원 |
|        | 적정 노후생활비 | 278.3만원 |